

A Study on the Survey of Cultural Diversity in
Goyang City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권선영
황설화

A Study on the Survey of Cultural Diversity in Goyang City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권선영(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설화(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발 행 일 2019년 9월 30일

저 자 권선영, 황설화

발 행 인 이재은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17-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제2장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11
제1절 국제환경	13
제2절 국내환경	21
제3절 고양시 정책환경	37
제3장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설계	57
제1절 실태조사 추진방향	59
제2절 실태조사 지표구성	61
제4장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79
제1절 조사 개요	81
제2절 문화다양성 지원 정책 분석	86
제3절 문화다양성 기반 여건 분석	93
제4절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분석	96
제5절 소결	129

제5장 고양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133
제1절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135
제2절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138
제3절 과제별 실천로드맵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49
Abstract	163

표 목차

[표 1-1] 고양시 외국인 현황(2012년~2017년)	3
[표 1-2]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까지의 발전과정	5
[표 2-1] 문화적 권리의 발전과 문화다양성 논의	15
[표 2-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주요내용	16
[표 2-3]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분석	19
[표 2-4]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21
[표 2-5] 외국인과의 혼인	22
[표 2-6] 북한이탈주민 현황	23
[표 2-7]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	24
[표 2-8] 무지개다리 사업 현황	29
[표 2-9] 지역단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	33
[표 2-10] 고양시 내의 외국인 주민 현황	37
[표 2-11] 고양시 내 국적별 등록외국인 수	38
[표 2-12] 고양시 내의 등록 장애인 수 추이	38
[표 2-13] 고양시 내의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수 추이	39
[표 2-14] 고양시 내 성별 인구 구성 추이	39
[표 2-15] 고양시의 남녀 경제활동인구	40
[표 2-16] 고양시 내의 세대별 현황	41
[표 2-17] 고양시 내의 문화재 추이	42
[표 2-18] 고양시와 유사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수 (2018년 1월 기준)	43
[표 2-19] 고양시의 문예회관 현황	43
[표 2-20] 고양시의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	44
[표 2-21] 고양시 문화의 집 운영 현황	45
[표 2-22] 2015 인구총조사: 고양시 주민의 종교	46
[표 2-23] 고양시 내의 가구 구성원별 추이	47

[표 2-24] 고양시 구별 1인 가구 증가 추이	47
[표 2-25] 고양시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48
[표 2-26]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	49
[표 2-27] 고양시 장애인 관련 조례	49
[표 2-28] 고양시 여성 관련 조례	52
[표 2-29] 고양시 노인 관련 조례	53
[표 2-30] 고양시 청년 관련 조례	54
[표 2-31]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	54
[표 2-32]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	55
[표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62
[표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연구요약	64
[표 3-3] 광주문화재단(2016) 조사 항목 및 세부 문항	65
[표 3-4] 광주문화재단(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67
[표 3-5] 인천시(2017) 문화다양성 지표 조사항목	69
[표 3-6] 인천발전연구원(2017)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71
[표 3-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 조사 분석의 틀	72
[표 3-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75
[표 3-9] 지표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과정	76
[표 3-10] 본 연구에서의 지표구성	78
[표 4-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세부지표 항목	81
[표 4-2] 고양시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조사_조사 설계	82
[표 4-3] 고양시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조사_조사 내용	83
[표 4-4] 고양시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조사_응답자 특성	84
[표 4-5]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87
[표 4-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사업 수	89
[표 4-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사업의 예	89

[표 4-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예산	91
[표 4-9]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93
[표 4-10]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95
[표 4-11]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 여부(응답자 특성별)	97
[표 4-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응답자 특성별)	99
[표 4-13]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필요성(응답자 특성별)	100
[표 4-14]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응답자 특성별)	102
[표 4-15] 소수자로서 차별 경험(응답자 특성별)	104
[표 4-16]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응답자 특성별)	106
[표 4-17] 소수자 인식 여부(응답자 특성별)	107
[표 4-18] 고양시의 사회적 현상의 발현 정도에 대한 인식(응답자 특성별)	109
[표 4-19]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 대책 충분성 인식(응답자 특성별)	109
[표 4-20] 문화예술활동 참여정도(응답자 특성별)	111
[표 4-21]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응답자 특성별)	114
[표 4-22]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에 대한 인식(응답자 특성별)	116
[표 4-23]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 대책 충분성 인식(응답자 특성별)	117
[표 4-24] 성별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18
[표 4-25]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19
[표 4-26]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21
[표 4-27]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23
[표 4-28]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25
[표 4-29] 고양시 문화정체성 부재 현상에 대한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26
[표 4-30] 고양시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27
[표 4-31]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28
[표 5-1]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과제 실천로드맵(안)	14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그림 2-1] 문화다양성 발전단계	14
[그림 2-2]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2015-2016)	27
[그림 2-3]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2017-2018)	28
[그림 2-4] 문화다양성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차이	31
[그림 3-1] 실태조사 추진방향	59
[그림 4-1]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86
[그림 4-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사업 수	88
[그림 4-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예산	91
[그림 4-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대상 간 지원예산 비율	92
[그림 4-5]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 여부(전체)	96
[그림 4-6]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 정도 및 지역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98
[그림 4-7]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101
[그림 4-8] 소수자로서의 차별 경험 정도	103
[그림 4-9] 차별의 원인	103
[그림 4-10]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 정도	105
[그림 4-11]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 및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한 인식	108
[그림 4-12]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110
[그림 4-13] 참여 중인 문화예술활동과 참여방식(n=380)	112
[그림 4-14]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걸림돌(중복응답) (1+2+3순위)	113
[그림 4-15]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 및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한 인식	115
[그림 4-16] 성별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18
[그림 4-17]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19
[그림 4-18]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20
[그림 4-19]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22

[그림 4-20]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24
[그림 4-21] 고양시 문화정책성 부재 현상에 대한 수용도	126
[그림 4-22] 고양시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27
[그림 4-23]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28
[그림 5-1] ‘2030문화비전’ 내 문화다양성 정책 내용과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136
[그림 5-2]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체계	137

요약

1. 서론

□ 연구배경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 문화다양성이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조건으로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함. 2010년,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협약 비준 이후,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의 이념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
- 현 정부에서 수립한 ‘문화비전 2030’의 9대 과제 중 네 번째 과제로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에서 문화다양성을 주요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현재까지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범정부적 총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구체성을 기반으로 구체적 실행계획 및 정책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을 토대로 함. 문화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발현하고 시민과 국민이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지역이기 때문임.
- 중앙정부에서 통합 운영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역량에 맞는, 또한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의 고민과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양시의 인식 제고 및 정책적 노력 필요

- 고양시는 총 인구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여러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됨. 시민들의 충분한 지지와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입된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갈등 출동이 야기될 수 있음.

- 고양시는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화 간/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문화교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 및 실행하기 위해 지역(민)의 문화적 수용성 및 포용성에 대한 역량 강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선행 필요

- 고양시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첫 걸음으로써 무엇보다 현황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하여 진단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목적

○ 선행지표 검토를 통한 고양시 문화다양성 조사지표 구성

- 고양시가 문화다양성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하는 기초연구가 요구됨. 하지만, 현재 고양시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를 조사하여 고양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분석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국가 수준 및

광역 단위 수준에서 실시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고자 함.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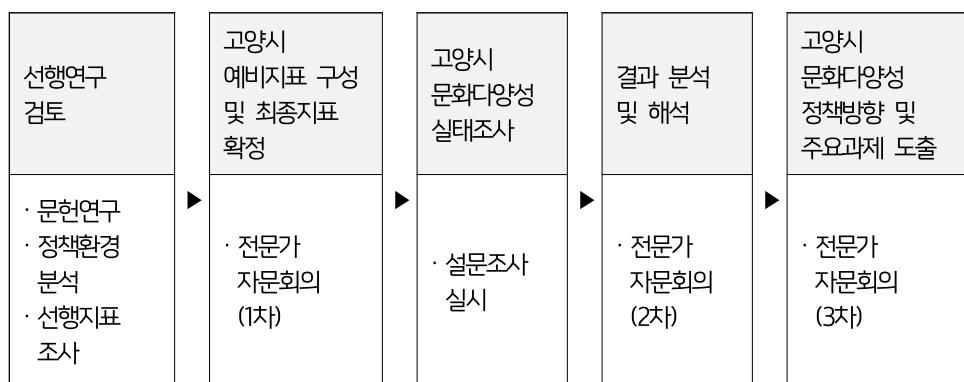
-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발전목표와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국제/국내/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 문화다양성 선행지표 검토
- 고양시 문화다양성 조사지표 구성
-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도출

○ 연구절차 및 방법



2.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 국제환경

○ 문화다양성 이념의 확산

- 문화다양성은 민족과 인종차별로 집단 학살에 이르게까지 했던 세계2차 대전의 반성으로 출발함. 문화다양성이 본격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문화산업이 주요한 시장개방 대상이 되면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개념으로 사용됨.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제33차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면서 본격화됨.

□ 국내환경

○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의 전환

- 2005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 축소가 논란이 되며 문화다양성 논의가 시작되었음. 문화다양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0년 유네스코 협약 비준 이후임. 2012년도부터 무지개다리 사업이 시작되고,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법률 제정됨. 이후 문화다양성 법에 기초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추진되었지만 주로 이주노동자와 탈북민 등 소수자 대상 동화정책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임.

○ 문화다양성 정책에서의 지역의 역할 강조

-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소수자가 거주하는 곳이자 소수자와 일반 시민이 소통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임.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획일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과 역량에 맞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자체 12곳에서 조례가 만들어짐.

□ 고양시 환경

○ 갈등하는 고양시

- 198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내부에서의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음. 개발과 미개발 지역에 따라 발생한 지역 격차 현상, 개발과 보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존하는 고양시

- 고양시는 최근 5년 간 약 1.1% 수준의 외국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로 인하여 외부로부터는 도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지만, 오래전부터 농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서 현재에도 농업을 바탕으로 한 고양의 전통과 역사가 현대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
- 고양시는 (2016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6개, 지방지정문화재 35개, 문화재 자료 11개, 등록문화재 자료 7개를 보유하고 있음. 역사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도시이지만, 도심의 젊은 시민들에게서는 그 관심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환경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외국민 주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을 위한 조례는 있지만 성 소수자를 위한 조례는 없었음. 고양시는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은 있지만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는 부족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의 의미가 담긴 단위사업들이 여러 부서 및 기관에서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총괄하거나 체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는 부서 및 조직은 없는 상태임.

3.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설계

□ 실태조사 추진방향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 진단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준을 국가 단위의 기준¹⁾에 준거하여 진단하고 문화다양성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소수자'에서 '소수성'으로 확대된 문화다양성 개념 반영

- 특정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닌, 시민과 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념으로서 반영하고자 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시민인식 분석

- 응답자 특성(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문화예술지출비용 등)에 따른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하여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주요과제 도출 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함.

□ 실태조사 지표 구성

○ 선행 지표연구 검토

- 선행 연구 검토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7b)의 조사지표들을 중심으로 예비지표 구성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표들을 확정하고자 하였음.

○ 지표 구성의 원칙

-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가능, 문화다양성 개념 범위의 조정(다문화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 일반시민 중심의 조사, 고양시의 지역성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적 현상 관련 문항 추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표 및 문항을 확정하였음.

1)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의 결과값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2013) 연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7b) 연구에서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였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b)	2019 본 연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여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
장애인	소수자 집단	성소수자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노인		타 종교인	아동
전통문화		-	청소년
지방문화		-	여성
대안문화예술		성별 불평등	노인
독립문화예술		-	국적/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독신가구의 증가	종교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주류 문화예술 독점	장애인차별
		전통문화 위기	고양시 내 지역갈등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세대 간 갈등
		-	주류 문화예술 독점
		-	전통문화 위기
		-	-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	고양시 지역 간 문화차이
		-	고양시 문화적 정체성 부재
		-	고양시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
4대 지표 (정책, 여건, 활동, 인식)		4대 지표 (정책, 여건, 활동, 인식)	3대 지표 (정책, 여건, 인식)

4.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 문화다양성 지원정책 분석결과

- 고양시에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없으나, 다양한 정책 영역 분야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음. 하지만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선행연구의 기준을 토대로 소수자 계층으로 범주화 된 북한이탈주민, 결 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은 대부분은 경제활

동 및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다양성이 다문화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임을 고려한다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은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성’이어야 함을 견지해야 할 것임.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분석 결과, 고양시에는 지역문화발전과 관련한 기존의 행사성 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음.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종 다양성 확보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기반여건 분석 결과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일부 특정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요구되는 개념이므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함.
- 정책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현황파악이 필요하므로, 문화다양성 관련 행정자료가 수집되고 공유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 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시민인식 분석 결과

○ 문화다양성 가치의 중요성 인식 증진 필요

-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 문화다양성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 필요함(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다양성 행사 주간 실시 등)

○ '지역갈등' 및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인지와 대응 중요

- 고양시의 시민(거주자포함)들은 대체적으로 차별경험이 없으며,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임. 단, 연령이 높을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리감을 좀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차별 및 다른의 문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지역

갈등'과 '세대 간 갈등'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에 대한 고양시의 인지 및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시민들의 문화적 표현과 참여방식의 다양화 필요

- 고양시의 시민(거주자포함)들은 문화예술 참여 경험이 전국 단위 평균 보다 높은 편,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나 지역축제, 역사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람 및 감상활동임. 활동 내용 및 방식의 다양화 필요함.
- 그러나 연령별로는 50대와 거주 지역별로는 덕양구 북부 시민들의 참여 경험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표현 및 참여 경험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함.

○ 문화예술 참여 및 표현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방안 모색

- 문화예술비용을 지출하는 응답자가 '전혀' 지출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하여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일수록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용도 높음.
- 특히,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관심도 낮음. 특히 20대, 일산서구 및 동구 시민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사업 수행 시 세대 또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고양시 및 고양시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정책지원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5. 고양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목표 추진전략

○ 정책목표

- 포용의 시민문화 형성
- 차이와 다른의 공존으로 상생
-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향유

○ 추진전략

-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 추진전략 ① :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 문화다양성 이해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접촉면 강화

○ 추진전략 ② :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매개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공동체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 추진전략 ③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 전담기구 구성(문화다양성정책 추진위원회)
-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추진 네트워크 지원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고양시의 다양한 문화의 유입 가속화 전망

- 최근 5년간의 고양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약 1.1% 수준의 외국인 인구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유사 인구 규모의 타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원시 약 2.8%, 성남시 약 1.7%, 용인시 약 1.6%, 창원시 약 1.4%, 고양시 총 인구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해야 할 현상임.

[표 1-1] 고양시 외국인 현황(2012년~201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인구수(명)	981,220	1,001,942	1,018,013	1,039,839	1,051,970	1,054,236
외국인 수(명)	11,304	11,371	11,859	12,293	12,286	12,253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1.15%	1.13%	1.16%	1.18%	1.17%	1.16%

자료 : 통계청, “등록외국인 현황(시도/시/군/구)”, 2019

- 또한, 현재 고양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주요 교통망 확대 사업(대곡~소사선 개통, GTX-A 완공, 백석IC 신설, 지하철 3·5호선 고양연장 추진 등)을 계획 중에 있어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의 유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 유입된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지역역량 강화 필요

- 앞서 언급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교통망 확대 사업은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한 경제발전,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충분한 지지와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입된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갈등 출동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 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조율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역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체육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이러한 적극적인 문화교류 사업 역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즉, 고양시는 다양한 문화가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화 간 /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문화교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 및 실행하기 위해 지역(민)의 문화적 수용성 및 포용성에 대한 역량강화의 노력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양시의 인식 제고 및 실질적인 정책반영 필요한 시기

- 문화다양성이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조건으로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함. 이러한 방식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에서 전승되는 것임¹⁾.
- 문화다양성 개념은 추상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에서처럼 UN 및 UNESCO의 국제적인 협약과 이행이라는 구체적이고 규정력을 갖는 실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음(박소현, 2018). 2011년 기준으로 117개 국가가 가입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으로 자리매김함.

¹⁾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2005) 제4조 1항 내용임.

[표 1-2]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까지의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45	[유네스코 헌장]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라 선언. 회원국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여 문화 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
1948	[유네스코 인권선언]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 참여권과 문화향유권을 지니며, 자신의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
1966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임을 선언. 인류 공동 유산으로서의 문화개념은 ‘세계문화와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으로 발전함
1976	[일반대중의 문화생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리] 문화 개념을 확대하여 집단과 개인의 생활양식 및 예술 활동 모두에서 문화의 조성과 그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함. 일반대중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을 언급함
1978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 문화적 차이가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가 이룩한 서로 다른 취는 각 민족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차이로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
1980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리] 유네스코가 1980년에 조직한 심포지엄에서 문화산업 개념이 문화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정의되고, 이어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리’(1980)가 채택됨.
1999	문화정책 국제네트워크, 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시민사회·학계·예술가·문화생산자 참여) 결성
2000	[인권과 문화다양성 결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서,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이자,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문화다양성을 보장해야 하고, 유엔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2001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유네스코는 이 선언과 실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선언은 4개 영역 12개 조항으로 구성됨. 4개 영역은 (1)정체성·다양성·다원주의, (2)문화다양성과 인권, (3)문화다양성과 창조성, (4)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임.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미국 주도의 전지구화 및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채택되었고, 협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측면이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이 만들어져 제안됨

자료 : 박소현.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범위·과제: 문화다양성 협약으로부터”, 2018.

-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이후,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2010년)하고,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691호, 이하 문화다양성법) 제정, 2017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을 공포하였음.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법은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우열과 차별, 소외됨 없이 다양한 형태로 향유·전승될 수 있을 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총괄은 필요하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정책과제 설계 등은 지역의 구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 하지만 고양시는 아직까지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다문화’ 중심의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어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고양시는 앞서 언급한 주요 정책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다양성의 의미 이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임.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수립 및 실행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고양시가 문화다양성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하는 기초연구가 요구됨.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임.
- 하지만, 현재 고양시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를 조사하여 고양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구성

- 기 개발된 국내외 문화다양성 지표를 활용하여 고양시 문화다양성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자 함. 이는 고양시의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의 적합성을 높여 정책이 일회적으로 실행되고 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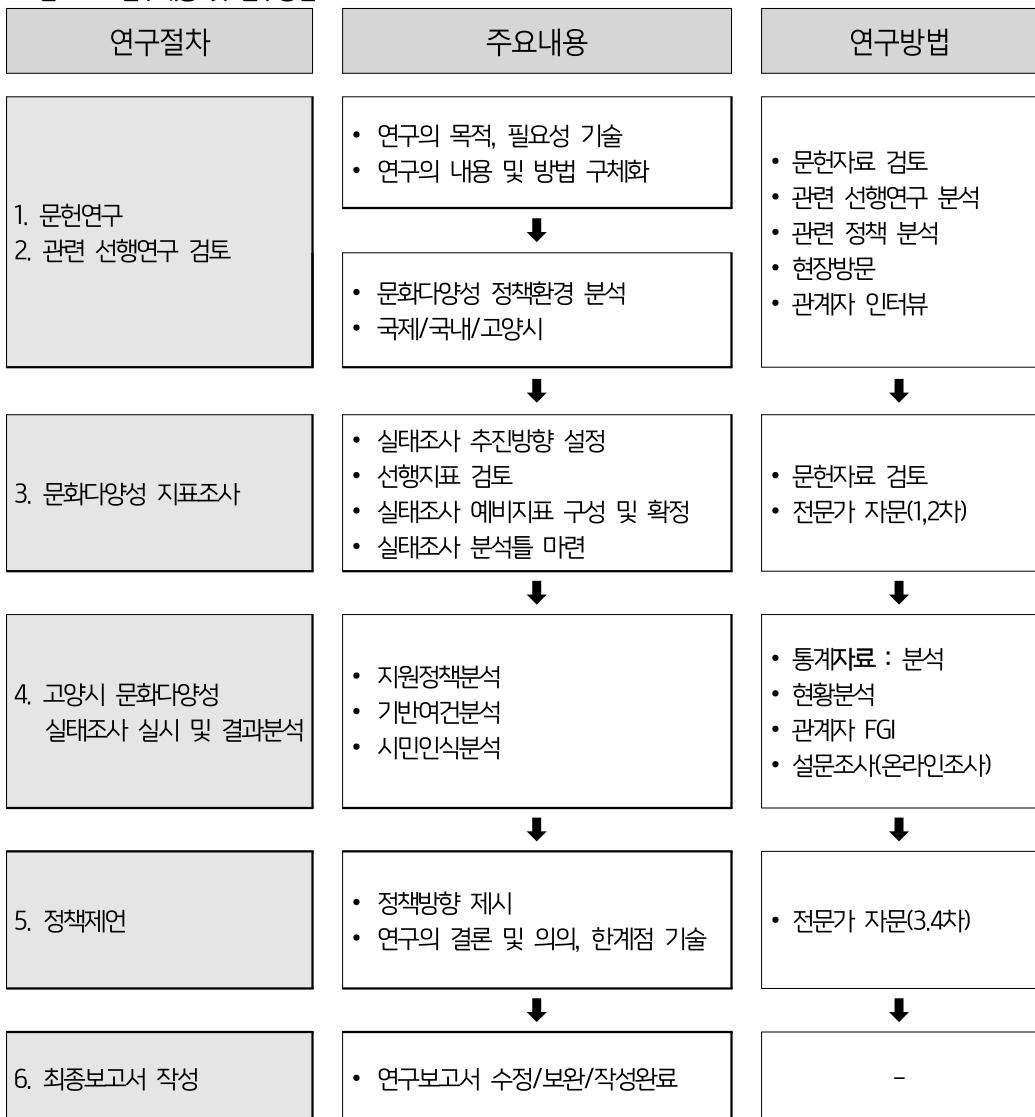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국가 수준 및 광역 단위 수준에서 실시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고양시가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 및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방안 도출

-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고양시에 필요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함.
-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전략과 추진체계들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는 고양시의 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관련된 학술논문 등을 검토하여 국제, 국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논의의 주요쟁점 및 동향을 파악함.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고양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지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봄.

2. 선행 지표조사 및 고양시 문화다양성 지표 구성

-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 지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국제/국내 단위, 중앙/지역 단위의 지표체계를 분석함.
-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고양시 문화다양성 지표 및 문항을 도출함.

3.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고양시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및 여건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FGI를 실시하였음.
- 또한, 고양시에 거주 및 근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양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함.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함.

4.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제안

- 앞서 실시한 문헌조사, 현황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FGI,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양시 문화다양성의 정책방향성과 주요과제를 도출함.

제 2 장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제1절 국제환경

제2절 국내환경

제3절 고양시 정책환경

제1절 국제환경

1. 국제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 및 발전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발전과 확산

- 1980년대 무역 자유화 및 단일 시장화 경향이 증가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따른 특정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 획일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이에 따른 문화정체성 및 고유성에 대한 보호와 문화주권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문화다양성 쟁점이 부상함(김면 외, 2017; 53–54쪽).
-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민족과 인종차별로 집단 학살에 이르기까지 했던 세계 2차 대전의 반성에서 출발함.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66), 시민/정치적 권리의 국제규약(ICCPR, 1966), 소수자 권리선언(1992) 등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합의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문화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세계화 이후라고 볼 수 있음. 1986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93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문화산업’이 주요한 시장개방 대상이 되면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이 문화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며 ‘문화다양성’ 개념을 제기함.
-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발전되어 온 과정은 유네스코가 창립하면서 현장에 명시했던 ‘풍요로운 다양성’의 확보라는 개념과 관련지으며 유네스코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어 옴. 유네스코의 2007년 보고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검토 및 전략’에서는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을 발전시켜온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음(Stenou, 2007; pp.75–77).
- 유네스코 문화전문관 스텐우(Stenou)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문화의 개념

을 지식, 예술, 정체성, 민주주의 등과 연계시키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개념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세계의 맥락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가했음.

[그림 2-1] 문화다양성 발전단계



자료 : 서울연구원(2018).『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향 연구』, 2018.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적 노력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위원회에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ity Diversity)’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시작됨.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이 생물다양성 만큼 중요한 것으로 국가, 지역, 이류사회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 지적함.
- 이에 대응하여 200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천명하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발표하여 문화다양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됨.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하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문화다양성을 ‘모든 인류의 자산이자 개인의 권리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라 천명함. 또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국제협약의 추진, 각국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추진 제고를 위한 협력과 지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진출,

모든 언어의 보호 및 보존과 다양한 언어표현의 창조와 보급, 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의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보전 등과 같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함.

[표 2-1] 문화적 권리의 발전과 문화다양성 논의

명칭	선언 및 규약		주 요 내 용
	연도	조항	
세계인권선언	1948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짐 · 모든 이는 자신이 창고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규약(ICESCR)	1966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권리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향유 권리,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화, 예술활동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보호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의 규약(ICCPR)	1966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적, 공적 장소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1992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적, 공적 장소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2001	제1조-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존엄성 존중 및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의 보호 ·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인정 ·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협력 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7a.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 : 문화다양성 협약

- 유네스코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 이후 선언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제33회 유네스코 정기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음.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은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제시되었던 문화다양성 가치의 증진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 협약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한건수, 2015: 178쪽).
- 문화다양성 협약은 총 35개의 조문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9개의 목적(제1조)과 8개의 원칙(제2조)이 설정되어 있고,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조항들이 있으며, 특히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당사국의 여러 국내 조치들(제6조~제8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협력(제12조~제17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제18조), 협약의 기관(제22조~제24조)에 관한 규정이 있음.
- 협약은 기본적으로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걸쳐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특수성 및 다원성에서 구현된다고 규정함. 또한 문화다양성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공동체와 민족,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라는 점을 천명함.

[표 2-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주요내용

「문화다양성 협약」전문(前文)

- ①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 ②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역적, 국가 간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 ③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제2조(협약의 지도 원리)

① 발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리

- 문화는 발전의 원천이므로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갖는다.

②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

-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복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제4조(정의)

- ①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②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 ③ “문화적 표현”은 문화 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 ④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그 상업적 가치와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
- ⑤ “보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들의 채택을 의미한다. “보호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조(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 ① 당사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 ②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동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문화다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의 노력

1) 주요 국가별 문화다양성 정책²⁾

- 독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자국 내 소수민족과 이주민 소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독일계 실향민, 동독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이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주민의 형태도 변화하였지만,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의 방향이 꾸준하게 진행되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문화의 등대’가 있음.
-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적 예외’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문화정체성, 문화의 자주적 생존권, 문화자주권 등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문화예술의 창작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사회통합 및 문화 창조를 추구하였음.
- 캐나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방적, 협의주의적인 특징을 지님. 소수민족의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는 신규 이주민의 유입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캐나다 헌법에는 ‘권리와 자유 헌장’에서 다문화유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법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이 가장 큰 특징임. 특히, 네덜란드는 2001년 동성 간 결혼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임. 동성 부부가 입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수술 없는 성전환 권리 등을 합법화하여 성소수자에게 친화적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평등, 선택의 자유,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함. 평등은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선택의 자유는 소수자들이 문화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 상호 이해 및 협력하는 것을 뜻함. 스웨덴은 1984년 평등기회법령을 발표하여 국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2) 이 절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b) 내용을 참조한 것임.

- 베트남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부 주도로 헌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변경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틀을 구축하며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에 비중을 둔다는 특징을 가짐.

[표 2-3]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분석

국가	배경	특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① 전후독일계실행민대량 이주 ② 1990년 동서독 통일 ③ 외국인 노동자 유입 ④ 국내 소르보, 집시, 데인족 소수민족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정책의 변천흐름: ① 1990년 외국인 거류자 법, ② 2000년 시민권, ③ 2005년 이민법의 개혁이 시도됨 - 연방 및 주정부 내 부처 간 협력과 재정투입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 구동독 연방지역의 문화통합을 위한 문화등대 운영 - 문화미디어행정부(BKM) 산하 세계문화의 집을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미국주도 세계화와 문화 획일화에 맞선 '문화적 예외' 정책 제시 - 전통적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자 증자를 지향하는 문화정책과 연계됨 -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주민갈등문제에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사회계약 프랑스정부의 능동적 대처로 동화주의를 투구하되 폐쇄적 단일문화국가가 아닌 역동적 통합문화창조 - 창작자자유, 문화재, 건축법을 통한 문화공동체 추구(2015) - 차별퇴치평등고용청 - 공교육기관 문화다양성 교육강화를 통한 문화감성증대, 시민성 함양 추구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인디언 원주민 소수 2% - 이민자와 연방제의 국가 -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류사회 - 공업국으로 전환, 노동력 필요에 의한 경제이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인위주 동화정책에서 이민자 고유 민족성과 다양성 인정 - 상호문화 교류증진정책 - 다문화사회의 모범국 - 연방전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제시와 기금지원 - 케백 문화아젠다 21정책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전체인구 중 22%가 이주민(1700만명)으로 대표적 다문화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공존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 인정 추구함 - 현재 정부는 공동의 언어와 가치를 갖는 시

국가	배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부터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 이주 본격화 - 암스테르담 50% 이상 이주민구성 - 국민 90% 이상 동성결혼찬성 및 성소수자 친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공동체를 추구하고,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특별정책에서 일반정책으로 분류 -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운영 - 동성부부권리, 성전환권리 합법화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1975년 의회다원, 다문화 사회통합법, 정책 제정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성격차지수 최상 위권 지위유지 - 1980~2006 이주민 100만명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중요한 요소 - 1988년 양성평등기회진흥 5개년 계획수립으로 여성노동자 가치를 높임 - 학교 내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확산 노력 - 극우 성향 특정 그룹(이슬람인, 유대인, 아프리카인, 집시 등) 적대 성향퇴치 노력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중국과의 항쟁 1천 년, 프랑스와의 투쟁 100년 등 외세의 침략에 의해 투쟁의식이 강함 - 중국으로부터 유교적 영향을 받았고 여성차별이 사회에 만연함 -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문화 산업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헌법개정: 사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 개정 추진, 세계 헌법의 맥락 차용 - 문화 및 예술 분야의 NGO가 법인으로 공식화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 - 국제 개발 협력 프로그램(경제, 교육,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에 문화발전 및 문화 창의성 문제 거론 - 베트남 통계청 주도로 문화산업을 위한 국가 기준 및 자료수집 시스템 구축 예정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2018b.

제2절 국내환경

1.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책흐름

1)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 유입

- 우리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분단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유입과 더불어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 그룹들이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민희, 2018: 68쪽).
-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원천징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임.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중요 인력이 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 지위로 인정된 것은 2004년이 되어서였음.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함. 외국인 근로자들은 차별받고 있음을 느끼며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가 되었음(전영평 외, 2011: 179–180쪽).

[표 2-4]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

	합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그 외 ³⁾	기타
2015	543,773	197,567	46,099	32,763	26,538	25,960	120,057	94,789
2016	563,495	205,335	44,118	34,087	28,198	25,079	126,296	100,382
2017	558,246	202,078	43,103	30,276	29,157	23,755	126,016	103,861

자료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현황”, 『국세통계』, 2019.

3) 그 외는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을 포함함

-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혼인 건수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건수가 2배 이상 높음(2017년 기준). 특히, 외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는 매매혼, 가정폭력, 인격모독, 빈곤, 한국화 강요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지원하던 과거 정책 때문임(이지훈, 2005; 전영평 외, 2011: 223–224쪽).

[표 2-5] 외국인과의 혼인

	남편-전체혼인건수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아내-전체혼인건수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2000	332,090	6,945	332,090	4,660
2001	318,407	9,684	318,407	4,839
2002	304,877	10,698	304,877	4,504
2003	302,503	18,750	302,503	6,025
2004	308,598	25,105	308,598	9,535
2005	314,304	30,719	314,304	11,637
2006	330,634	29,665	330,634	9,094
2007	343,559	28,580	343,559	8,980
2008	327,715	28,163	327,715	8,041
2009	309,759	25,142	309,759	8,158
2010	326,104	26,274	326,104	7,961
2011	329,087	22,265	329,087	7,497
2012	327,073	20,637	327,073	7,688
2013	322,807	18,307	322,807	7,656
2014	305,507	16,152	305,507	7,164
2015	302,828	14,677	302,828	6,597
2016	281,635	14,822	281,635	5,769
2017	264,455	14,869	264,455	5,966

출처 : 통계청, “시도/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인구동향조사』, 2019.

-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회적 소외와 차별로 인해 한국인도 북한인도 아닌 혼란에 빠지게 됨.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냉전체제 붕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증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함.
-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실정임(전영평 외, 2011: 289–292). 이처럼 한국사회의 환경변화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하게 됨.

[표 2-6] 북한이탈주민 현황

구분	남(명)	여(명)	합계(명)	여성비율
~1998	831	116	947	12%
~2001	565	478	1043	46%
2002	510	632	1142	55%
2003	474	811	1285	63%
2004	626	1272	1898	67%
2005	424	960	1384	69%
2006	515	1513	2028	75%
2007	573	1981	2554	78%
2008	608	2195	2803	78%
2009	662	2252	2914	77%
2010	591	1811	2402	75%
2011	795	1911	2706	71%
2012	404	1098	1502	73%
2013	369	1145	1514	76%
2014	305	1092	1397	78%
2015	251	1024	1275	80%
2016	302	1116	1418	79%
2017	188	939	1127	83%

출처 : 통일부.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정책」, 2019.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존의 정책흐름

- 문화다양성을 위한 정책은 명칭만 달랐을 뿐 이전부터 존재하였음.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문화상품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듯,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 시행된 영화산업 분야의 스크린쿼터제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음.

[표 2-7]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

구 분	내 용
스크린쿼터제 (196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산영화 보호정책임.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미국 영화사들의 독점방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이유로 유지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여화를 상영하여야 함을 규정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둠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증가로 이민자 가족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 분	내 용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3.27.

- 이 이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음.
 - 200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2006년에는 중앙 부처들이 통합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함. 이 지원 대책은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증가로 이민자 가족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음.
 -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함.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

- 2005년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반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동의를 표하였고 문화관련 시민단체들의 협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있었음. 그로부터 5년 후 2010년에 우리나라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국회에 비준한 110번째 국가가 됨(한건수, 2015: 164–166쪽).
- 2014년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이 법률을 통해서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 간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제2조)’라고 정의함.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할 것을 규정(제3조)하였음.

2.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현황과 과제

1) 문화다양성의 날과 문화다양성 주간

- 2002년 UN총회에서 매년 5월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a). 한국은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문화다양성의 날과 문화다양성 주간을 명시함(제1항).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제2항).

- 한국의 첫 문화다양성의 날과 주간행사는 2015년 5월21일부터 27일까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개최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지를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청주시로 정하였음. 2015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달라서 아름답다. 달라야 건강하다. 차이(差異)를 즐기자! 문화공감!!!’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영화제, 공예체험, 미술작품전시, 연극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⁴⁾
- 2016년에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가 개최되었음. ‘차이(差異)를 즐기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체험, 공연, 학술, 전시,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⁵⁾ 한편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즐기기 위한 ‘521 한 가지 약속’이라는 캠페인 진행하였음.

[그림 2-2]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2015~2016)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일: 2019.10.3.)

- 2017년에는 문화다양성 주간 개막도시로 부산이 선정되었음. 부산 광복로를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주관행사 개최됨. 전시와 캠페인, 공연, 체험, 학술행사 등의 프로그램 진행되었음.⁶⁾
- 2018년에는 5월 18일부터 10일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부천, 청주, 영월 등 무지

4) 아이뉴스24 “문체부 '2015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2015.05.20.)

5) 노컷뉴스 “문체부, 21일부터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2016.05.19.)

6)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05/01.php?page=8&id=notice&mode=view&b_idx=2130)

개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영월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은평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익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제6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종로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27개 기관이 참여하였음.⁷⁾

[그림 2-3]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2017-201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5월 17일자 보도자료)

2)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

-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주민, 다문화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문화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임.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의 공공문화기관을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무지개다리 사업의 목적: ① 국민에게 문화다양성 인식이 확산되고 문화예술을 기

7) 뉴스핌 “문화다양성주간, 21일부터 7일간...전시·체험·공연·포럼 등” (2018.05.17.)

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사업 증가, ② 문화 간 교류·소통·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인 문화 주체로서 문화적 소수자의 역할 확대, ③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업 개발과 정착(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a).

- 무지개다리 사업의 수혜단체는 자신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주민이나 문화 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등을 의미함. 무지개다리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주관단체를 선정함. 각 지역별 선정된 주관단체들은 지역 내 풀뿌리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연계·지원함. 또 수혜단체(문화 예술단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소통·공유·나눔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지역기반시설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혜단체와 문화를 교류하도록 역할하며, 문화예술 전문 인력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 등)들이 재능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 지원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 기관에서 추진함. 2013년부터는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8] 무지개다리 사업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산	22.7억 원	23.9억 원	24.3억 원	24.3억 원	19.9억 원
참여기관	12개 (광역도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기초문화재단 3개)	17개 (광역도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기초문화재단 8개)	23개 (광역도 문화재단 6개, 광역시 문화재단 3개, 기초문화재단 11개, 기타 3개)	24개 (광역도 문화재단 5개, 광역시 문화재단 3개, 기초문화재단 11개, 기타 5개)	25개 (광역도 문화재단 6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기초문화재단 12개, 기타 3개)
프로그램 수	138개	124개	183개	233개	242개
참여자 수	124,812명	36,369명	108,830명	187,012명	226,321명
연구기관	QX	(주)장앤파트너 스 그룹	(주)장앤파트너 스 그룹	(주)장앤파트너 스 그룹	(주)장앤파트너 스 그룹
비고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다년도 지원	다년도 지원	3년 지원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201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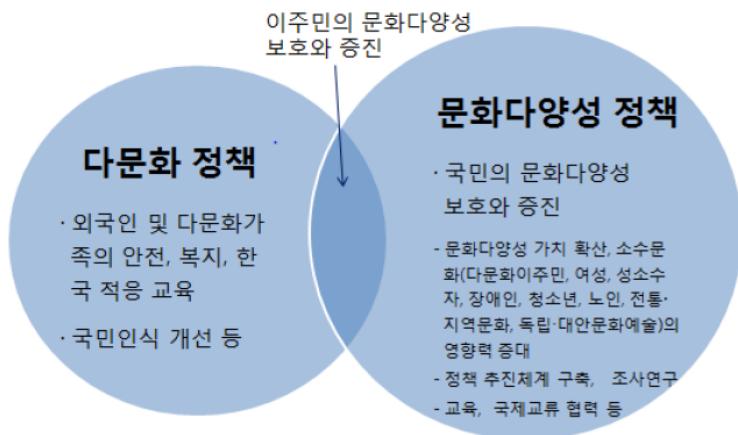
3) 문화다양성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혼재

- 우리나라는 2014년 문화다양성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반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임(김면, 2018).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유네스코(UNESCO) 지정 문화다양성의 날 개막식과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 문화행사 추진 등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원 운영 사업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 공공문화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역 내 소수문화, 세대문화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교류와 소통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과 운영 사업
 - 문화예술기반 교육과정 개발·보급·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사업⁸⁾
-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단기간에 비해 급진적인 양적 발전을 겪었음. 반면 문화적 다양성 관점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채 다문화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한다기보다는 예산집행에만 집중하는 아쉬움 나타남. 또한 정책대상을 소수자에 국한하여 한국의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됨(채경진 외, 2013).
- 기존의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필요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a).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은 공통분모가 있긴 하지만 다름.

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ko.or.kr/m1_04/m2_04.do?mode=view&page=1&cid=1600117) 참고

-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과 귀화자를 정책대상으로 삼아 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전, 복지, 한국 적응 교육, 국민인식 개선 등이 다문화정책이라면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 하위문화, 비주류문화까지 정책대상이 됨. 국민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소수문화(다문화이주민, 여성, 성소주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통·지역문화, 독립·대안문화예술)의 영향력 증대, 국제교류 협력 등을 다룸(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기존 정책이 가지는 정책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문화다양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문화 다양성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그림 2-4] 문화다양성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차이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2016, p.29.

3. 지역단위에서의 문화다양성 논의

1) 지역별 조례 제정

-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6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들이 만들어짐.

-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12곳)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강북구, 익산시였음. 교육청(2곳)으로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있음. 각 조례들은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b)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7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 서울특별시(2017.5), 부산광역시(2017.3), 광주광역시(2017.1), 경기도(2017.3), 충청북도(2017.11), 전라남도(2016.12), 제주특별자치도(2017.6).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그 외 지역협력체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 문화다양성 추진방향을 8가지 선언문으로 제정함.
- 각 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우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목포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5곳이 있음.
- 문화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언급한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목포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익산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로 9곳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한 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서울시, 익산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로 10곳임. 교육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언급한 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서울시,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로 9곳임. 지원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다양한 문화의 표현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함. 보통 교육과 지원이 같이 언급되고 있었지만, 부산광역시는 조례 안에서 교육과 지원이 언급되지는 않았음.
- 경기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교육사항을 규정함.
- 경기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없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련한 협력 사업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지원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음. 협력 사업이란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을 의미함(경기도교육청 조례 제7조).
- 지원은 교육감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경기도교육청 조례 제9조).

[표 2-9] 지역단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

구분	내용
전라남도 (20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구분	내용
광주광역시 (20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목포시 (20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경기도 (20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 (20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20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경기도교육청 (20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20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충청북도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구분	내용
익산시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경상남도 교육청 (201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전라북도 (20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2.

2) 지역별 정책추진

□ 지역특성 반영한 문화다양성 정책추진 및 지자체 역할 중요

-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 소수자가 거주하는 곳이자 소수자와 일반 시민이 서로 소통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이혜진 외, 2016).
-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은 지역마다 거주하는 소수자 현황이 다르고, 지자체별로 정책을 수행할 조직이나 자체사업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나름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함(김면, 2019; 한승준, 2009; 강휘원, 2007).
- 지자체는 소수자에게 정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함.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과 소수자집단의 문제는 지자체를 통해 중앙정부로 올라감.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문화적 문제는 지자체와 분리할 수 없음(강휘원, 2007).

□ 문화다양성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별 전담조직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획일화의 우려가 있음. 또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에서 연계 없이 이루어져 업무의 중복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발생함.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통합운영 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과 역량에 맞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거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통합서비스 전달기관들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자 주민이 거주한다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 특색이나 소수자 특성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하도록 해야 함(한승준, 2009).
- 다양한 이민족과 다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고 지역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등 지역거버넌스의 모색이 필요함(김면, 2019; 채경진 외, 2013; 한승준, 2009; 강휘원, 2007).

□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요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노출될 기회 확대되어야 함. 또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인종 관련된 태도 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다문화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교육 등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문화다양성 역량을 갖춘 시민들이 증가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음(박신영 외, 2019; 박윤경 외, 2015).

제3절 고양시 정책환경

1. 인구의 다양성 현황

□ 외국인 현황

- 고양시 내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21,668명(100%)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522명(76.25%)이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2,331명(10.76%)이었음.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815명(12.99%)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2019).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16,522명(100%)을 세분화 해보면 외국인 근로자 4,920명(29.78%), 기타 외국인 4,894명(29.62%), 외국국적동포 3,761명(22.76%), 결혼 이민자 2,553명(15.45%), 유학생 394명(2.38%) 순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2019).

[표 2-10] 고양시 내의 외국인 주민 현황

구분	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명)						한국 국적 취득자 (명)	외국인 주민자녀 (명)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15년	21,350	16,349	5,660	2,169	265	3,599	4,656	2,054	2,947
	(100%)	(76.6%)	(34.6%)	(13.3%)	(1.62%)	(22.0%)	(28.5%)	(9.6%)	(13.8%)
2016년	21,340	16,516	5,306	2,505	356	3,465	4,884	2,193	2,631
	(100%)	(77.4%)	(32.1%)	(15.2%)	(2.2%)	(21.0%)	(29.6%)	(10.3%)	(12.3%)
2017년	21,668	16,522	4,920	2,553	394	3,761	4,894	2,331	2,815
	(100%)	(76.3%)	(29.8%)	(15.5%)	(2.4%)	(22.8%)	(29.6%)	(10.8%)	(13.0%)

자료 :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9.

- 2018년 기준으로 고양시 내 등록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48.62%), 베트남(8.80%), 타이(5.78%), 캄보디아(4.69%), 필리핀(3.41%)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미국, 일본, 파키스탄, 타이완, 이집트, 인도, 러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영국, 카메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73개 이상 나라의 외국인들이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음.

[표 2-11] 고양시 내 국적별 등록외국인 수

계(명)	중국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그 외
12,664 (100%)	6,157 (48.62%)	1,115 (8.80%)	732 (5.78%)	594 (4.69%)	432 (3.41%)	3,634 (28.70%)

자료 :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자영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9.

□ 장애인 현황

- 고양시 내의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살펴본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38,919명이 집계됨. 고양시 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남성은 22,454명, 여성은 16,465명으로 나타나 남성 장애인의 수가 더 많음.

[표 2-12] 고양시 내의 등록 장애인 수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 수(명)	35,677	36,132	36,584	37,366	38,215	38,919
남성(명)	20,483	20,755	21,080	21,549	22,066	22,454
여성(명)	15,194	15,377	15,504	15,817	16,149	16,465

자료 : 통계청, “시군구별, 장애등급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19.

- 등록 장애인의 급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의 경우 1~3급에 속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의 경우 4~6급에 속함. 고양시 내에는 2017년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이 15,110명이었고 경증 장애인이 23,809명으로 경증 장애인의 수가 더 많음.

[표 2-13] 고양시 내의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수 추이

구분	합계(명)	중증				경증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6급
2012	35,677	14,263	3,538	4,845	5,880	21,414	5,182	7,562	8,670
2013	36,132	14,334	3,555	4,880	5,899	21,798	5,198	7,723	8,877
2014	36,584	14,422	3,527	4,954	5,941	22,162	5,188	7,872	9,102
2015	37,366	14,753	3,546	5,132	6,075	22,613	5,240	7,993	9,380
2016	38,215	14,866	3,514	5,176	6,176	23,349	5,436	8,344	9,569
2017	38,919	15,110	3,548	5,297	6,265	23,809	5,560	8,551	9,698

자료 :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장애등급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장애인현황』, 2019.

□ 남녀 성별 현황

- 고양시 내의 총 인구수는 2017년 기준으로 1,041,983명으로 남성이 511,564명, 여성이 530,419명으로 성비가 96.4로 나타나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또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4] 고양시 내 성별 인구 구성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인구수(명)	969,916	990,571	1,006,154	1,027,546	1,039,684	1,041,983
남성	478,333	487,990	495,535	505,459	510,923	511,564
여성	491,583	502,581	510,619	522,087	528,761	530,419
성비 ⁹⁾	97.3	97.1	97.0	96.8	96.6	96.4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9)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즉 성비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인구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상회하고, 100 이하일 경우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상회함을 의미함

[표 2-15] 고양시의 남녀 경제활동인구

구분	성별	상반기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15~64세 고용률 (%)
2013	남자	267.2	262.0	101.2	72.5	71.1	76.5
	여자	179.3	176.1	223.8	44.5	43.7	49.2
2014	남자	277.5	270.5	104.4	72.7	70.8	76.3
	여자	188.4	184.7	228.5	45.2	44.3	49.8
2015	남자	279.0	270.5	111.9	71.4	69.2	75.0
	여자	197.0	191.5	228.9	46.2	45.0	51.4
2016	남자	283.0	274.2	115.9	71.0	68.7	74.3
	여자	206.8	200.4	230.4	47.3	45.8	52.4
2017	남자	287.9	279.6	116.7	71.2	69.1	74.7
	여자	199.8	190.1	243.6	45.1	42.9	49.1
2018	남자	297.2	287.9	109.0	73.2	70.9	76.9
	여자	203.0	193.6	243.0	45.5	43.4	50.1
구분	성별	하반기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15~64세 고용률 (%)
2013	남자	272.8	268.9	100.9	73.0	72.0	77.8
	여자	187.2	184.0	221.7	45.8	45.0	50.9
2014	남자	276.7	272.5	108.8	71.8	70.7	76.2
	여자	192.8	188.0	227.9	45.8	44.7	50.5
2015	남자	280.6	273.8	116.5	70.7	68.9	74.4
	여자	195.6	192.1	237.2	45.2	44.4	50.4
2016	남자	289.7	281.3	110.6	72.4	70.3	75.7
	여자	206.4	198.5	233.1	47.0	45.2	51.3
2017	남자	299.5	285.4	106.8	73.7	70.2	75.5
	여자	194.4	188.9	251.4	43.6	42.4	48.7
2018	남자	299.7	288.0	108.6	73.4	70.5	76.5
	여자	207.4	199.9	240.5	46.3	44.6	51.4

출처 : 통계청, “시군/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지역별고용조사』, 2019.

□ 세대별 현황

- 고양시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점차 증가하며 고령인구비율도 2012년에 9.68%에서 2017년에 11.55%를 차지함. 반면 출산율은 2012년에 1,211명에서 2017년에 0.960명으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청년인구 비율은 2012년에 22.71%에서 2017년에 22.54%로 나타나 다소 감소함.

[표 2-16] 고양시 내의 세대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5세 이상 고령자(명)	93,853	99,028	104,096	110,050	114,092	127,773
고령인구비율 ¹⁰⁾	9.68%	10.00%	10.35%	10.71%	10.97%	11.55%
출산율	1,211	1,087	1,111	1,161	1,071	0.960
청년층(명) ¹¹⁾	222,819	230,816	233,982	238,364	269,675	237,618
청년인구 비율	22.71%	23.04%	22.98%	22.92%	25.64%	22.54%

출처 : 통계청, 『e-지방지표』, 2019.

10)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인구÷전체인구)×100

11)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문화관련 시설의 다양성 현황

□ 문화재

- 고양시 내의 문화재는 2012년에 46개였다가 2016년에 62개가 됨. 2016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6개, 지방지정문화재 35개, 문화재 자료 11개, 등록문화재 자료 7개를 보유함(아래 [표 2-17] 참고).

[표 2-17] 고양시 내의 문화재 추이

문화재별(1)	문화재별(2)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지정문화재	소계	46	47	54	59	62
	소계	14	14	14	14	16
	보물	4	4	4	4	6
	사적 및 명승	8	8	8	8	8
	천연기념물	1	1	1	1	1
	국가무형문화재	1	1	1	1	1
지방지정문화재	소계	23	24	30	34	35
	유형문화재	15	15	20	24	24
	기념품	5	6	6	6	6
	민속문화재	1	1	2	2	2
	무형문화재	2	2	2	2	3
문화재자료	소계	9	9	10	11	11
등록문화재자료	소계	2	2	6	7	7

출처 : 고양시, “문화재”,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2019.

□ 문화기반시설

- 고양시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8년 기준 35개로 공공도서관 17개, 박물관 10개, 미술관 3개, 문예회관 3개, 지방문화원 1개, 문화의 집 1개로 나타남. 공공도서관의 경우 교육청과 사립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만 17개였으며, 박물관의 경우 국공립 2개, 사립 7개, 대학 1개로 운영됨. 미술관의 경우 대학은 없고 국공립 1개, 사립 2개로 운영됨(아래 [표 2-18] 참고).

[표 2-18] 고양시와 유사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수 (2018년 1월 기준)

지역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고양	35	0	17	17	0	0	10	2	7	1	3	1	2	0	3	1	1
수원	37	0	24	21	2	1	7	4	1	2	2	1	1	0	3	1	0
성남	22	0	12	11	1	0	2	1	0	1	4	1	2	1	1	1	2
용인	42	0	17	16	0	1	16	3	9	4	5	1	4	0	3	1	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b

□ 문예회관

- 고양시의 문예회관은 고양시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3곳임. 건립주체는 모두 고양시이고 고양시문예회관의 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며 고양 아람누리와 고양어울림누리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함(아래 [표 2-19] 참고).

[표 2-19] 고양시의 문예회관 현황

시설명	고양시문예회관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문예회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운영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재)고양문화재단	(재)고양문화재단
운영기관 성격	공공기관 위탁	민간기관 위탁	민간기관 위탁
홈페이지	http://goart.gys.or.kr	www.artgy.or.kr	www.artgy.or.kr
개관일	1989.09.01.	2007.05.04	2004.09.01
연면적	4,919.80m ²	56,351.20m ²	43,744.30m ²
총 직원 수	5명	84명	-
전문 직원 수	-	23명	-
공연 일수	9일	359일	319일
전시 일수	-	304일	222일
공연유료관객	6,000명	65,684명	71,661명
총 이용자 수	82,490명	245,259명	191,791명
연간운영비	221,000,000원	5,511,000,000원	12,468,000,000원
공연및대관수입	59,000,000원	1,319,000,000원	592,000,000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b.

□ 지방문화원

- 고양시의 지방문화원인 고양문화원은 1984년 2월 23일에 설립되어 현재 행주문화제, 전통문화상설공연, 정월 대보름 달맞이, 오월단오제, 행주나루강풍어제 등 지역의 주요 전통문화 축제 및 공연 등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음(아래 [표 2-20] 참고).
-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본 문화원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주로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방문객의 주를 이루고 있음.

[표 2-20] 고양시의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

문화원명		고양문화원
설립일		1984. 2. 23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
회원 수		323명
인력 현황	사무국장	1명
	직원	4명
	기타(공무원 등)	-
	계	5명
예산현황	분권교부세	
	지방비	681,386,000원
	국고(기금 등)	51,000,000원
	자체자금	63,811,000원
	기타	277,642,000원
	계	1,073,839원
시설현황	사무실	96m ²
	강당	663m ²
	기타	1,555m ²
	계	2,315m ²
주요 운영 프로그램	· 행주문화제	· 민속학 자료발간 및 학술대회
	· 전통문화 상설공연	· 청소년 외국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 정월대보름 달맞이	· 고양행주취타대 및 인형극단 운영
	· 오월단오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령진혼제
	· 행주나루 강풍어제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등
	연간 참여자 수	54,000명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b.

□ 문화의 집

- 고양시의 문화의 집은 2008년 4월1일에 개관하여 현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음. 프로그램은 댄스, 미술, 음악, 체험 등과 관련한 약 200여 개가 상설되어 있으며, 약 3,000명이 문화의 집을 다양하게 활용 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2-21] 참고).

[표 2-21] 고양시 문화의 집 운영 현황

구분	고양문화의집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99	
개관일	2008. 4. 1	
운영형태 및 운영주체(운영기관)	위탁 / 고양도시관리공사	
연간 이용자 수(명)	378,855	
운영 인력 수(명)	95	
문화의집 총면적(m ²)	1819.4	
운영시설현황 (m ²)	문화관람실	143.99
	문화창작실	97.94
	문화사랑방	34.8
	인터넷부스	51.75
	A/V 부스	14.82
	CD부스	19.17
	자료실	75
	휴게실, 놀이방	138
	안내데스크	-
프로그램 총수	200	
프로그램 수	200	
상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 댄스 : 줄바댄스, 에어로빅, 라인댄스, 디아트스텝,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방송힙댄스, 밸리댄스, 라인댄스 등
		· 미술 : 키즈아트, 서양화, 동양화, 창의미술, 소묘, 서예 등
		· 음악 : 하모니카, 기타, 플룻, 난타, 팝송교실, 노래교실, 우크렐레, 오카리나 등
		· 학습 : 커피야기, 영어교실, 영어, 일본어, 주산, 중국어, 세계사, 포토샵, 문서활용, 액셀, GTQ자격증반 등
		· 체험 : 떡한과만들기, 가베, 레고, 캘리그라피 등
		· 기타 : 저파제빵기능사, 칠흙놀이, 종이접기, 도자기페인팅, 민화, 바둑 등
이용자수(명)	3,340	
예산총액(원)	911,767,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b.

3) 사회문화적 다양성 현황

□ 종교 현황

- 고양시 주민들의 종교는 2015년을 기준으로 기독교(개신교) 247,810명, 기독교(천주교) 105,094명, 불교 96,861명, 원불교 1,177명, 천도교 1,172명 순으로 나타남. 그밖에 유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 등이 존재하여 다양한 종교가 혼재함을 알 수 있음.

[표 2-22] 2015 인구총조사: 고양시 주민의 종교

구분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대순 진리회	대종교	기타
2015	247,810	105,094	96,861	1,177	1,172	1,002	405	36	1,370
2005	213,132	124,182	131,969	1,688	753	-	-	-	2,385

출처 : 통계청,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인구총조사』, 2017.

□ 가족형태 현황

- 고양시 내의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고,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함. 또 일반가구 내에 외국인도 포함됨.
- 2017년 기준으로 고양시 내에서 2인 가구(25.11%), 3인 가구(24.62%), 1인 가구(22.18%) 순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내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이상은 점차 감소함.
- 고양시 내의 구별로도 1인 가구 증가에 차이를 보임. 2017년 기준으로 일산 동구 25.1%, 덕양구 23.3%, 일산 서구 17.2% 순으로 나타남(문정화 외, 2018: 57쪽).
-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인 가구가 28.5%이며, 경기도 1인 가구는 24.4%의 비율을 보임. 고양시는 22.2%로 1인 가구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문정화 외, 2018: 57쪽).

[표 2-23] 고양시 내의 가구 구성원별 추이

세대 구성별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일반가구 (가구)	일반가구 (가구)	일반가구 (가구)	비율 (%)	비율 (%)	비율 (%)
계	351,477	357,684	364,356	100	100	100
1인 가구	74,782	77,285	80,811	21.28%	21.61%	22.18%
2인 가구	85,831	87,859	91,489	24.42%	24.56%	25.11%
3인 가구	85,659	87,985	89,708	24.37%	24.60%	24.62%
4인 가구	80,851	80,267	78,937	23.00%	22.44%	21.66%
5인 가구	18,997	18,980	18,392	5.40%	5.31%	5.05%
6인 가구	4,232	4,163	4,002	1.20%	1.16%	1.10%
7인 이상 가구	1,125	1,145	1,017	0.32%	0.32%	0.28%

출처 : 통계청,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시군구”, 『인구총조사』, 2019.

[표 2-24] 고양시 구별 1인 가구 증가 추이

(단위: 가구/%)

구분	2005		2010		2015		2017	
	전체가구	1인 가구						
고양시	276,394	44,328 (16.0)	303,568	58,392 (19.2)	351,477	74,782 (21.3)	364,356	80,811 (22.2)
덕양구	122,875	21,818 (17.8)	127,333	25,308 (19.9)	153,947	34,207 (22.2)	160,923	37,509 (23.3)
일산동구	70,324	13,403 (19.1)	89,838	21,125 (23.5)	100,816	24,790 (24.6)	105,242	26,450 (25.1)
일산서구	83,195	9,107 (10.9)	86,397	11,959 (13.8)	96,714	15,785 (16.3)	98,191	16,852 (17.2)

출처 : 통계청,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시군구”, 『인구총조사』, 2019.

3) 고양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 고양시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조례

- 고양시 내 외국인 주민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29.78%), 기타 외국인(29.62%), 외국국적동포(22.76%), 결혼 이민자(15.45%)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 현재 고양시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고양시의 실·국·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나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2-25] 고양시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8년 12월1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또한, 고양시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조례가 있음.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조례였음. 또한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함.
- 고양시는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경제 거점도시 구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재 고양시에는 북한이탈주민 519명이 거주함.
- 한편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현황을 다룰 때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대상을 다루지만 성소수자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는 성소수자를 담당하는 실·국·기관을 찾을 수 없었고, 현재의 데이터로는 고양시의 성소수자를 확인할 수도 없었음.

[표 2-26]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 1월1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4년 8월2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고양시 내 장애인을 위한 과제

- 고양시 내 장애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함.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고양시는 현재 16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음. 또한 고양시 복지여성국 내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표 2-27] 고양시 장애인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2005년 7월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6년 12월2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 6월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6년 12월2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3월1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자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2009년 9월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년 10월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년 9월2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2017년 3월3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돋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8년 5월2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9년 12월1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년 10월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013년 8월9일 제정)	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2018년 12월1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년 2월2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9조 및 제5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의 가정병상지원비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재활지원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12년 9월2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고양시 내 여성을 위한 과제

-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현실은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존재함. 고양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 운영, 여성인력개발, 양성평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례도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 여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7개가 존재하지만 부족한 실정임.
-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 그러나 고용율과 취업자는 남성이 더 높은데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또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기 때문에 고양시 내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덜 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2-28] 고양시 여성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7년 9월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2011년 8월5일 제정)	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2011년 11월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1년 11월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2010년 12월1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9년 12월3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고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999년 12월3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고양시 내 노인 관련 과제

- 고양시 내에서도 고령인구비율은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청년인구비율 또한 감소함. 현재 고양시는 복지여성국 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가구 지원, 경로당 관련 업무, 노인회, 노인 돌봄 등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조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시설, 노인 학대 예방, 노인회, 저소득 노인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표 2-29] 고양시 노인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6년 4월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96년 8월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05년 11월1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016년 5월2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7년 12월2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10월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2018년 12월1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고양시 내 청년 관련 과제

- 고양시 청년들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2017년에 제정됨. 또 고양시 일자리 경제 국에서 청년지원,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관련 업무로 제한됨. 그 동안 고양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정책들이 요구되는 실정임.

[표 2-30] 고양시 청년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2017년 3월3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고양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고양시 소수집단 관련 과제

- 마지막으로 고양시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조례가 있음.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조례였음. 또한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함.
- 고양시는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경제 거점도시 구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재 고양시에는 북한이탈주민 519명이 거주함.
- 한편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현황을 다룰 때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대상을 다루지만 성소수자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는 성소수자를 담당하는 실·국·기관을 찾을 수 없었고, 현재의 데이터로는 고양시의 성소수자를 확인할 수도 없었음.

[표 2-31]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 1월1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4년 8월2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 문화 관련 조례

- 고양시는 2016년 기준으로 62개의 문화재를 보유함. 또한 고양시와 유사한 지방자치 단체들(수원, 성남, 용인)의 문화기반시설 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문화기반시설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님. 고양시는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문화예술진흥 업무와 문화유산활용 업무를 담당함. 문화다양성 흐름에 맞는 업무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들이 부족한 실정임.

[표 2-32] 고양시 문화재 및 문화기반시설 관련 조례

구분	내용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1992년 2월1일 제정)	제1조 이 조례는 문화재 환경보존 및 정비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고양시향토문화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1992년 2월1일 제정)	제1조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행주산성(사적 제56호)의 보호관리 및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1992년 2월1일 제정)	제1조 이 규칙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3년 10월18일 제정)	제1조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2003년 6월18일 제정)	제1조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3년 1월18일 제정)	제1조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양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내용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2월2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고양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돋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2013년 11월11일 제정)	제1조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9.4.4.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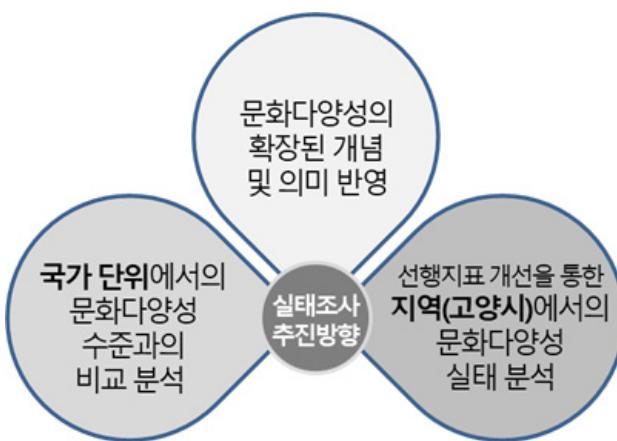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설계

제1절 실태조사 추진방향

제2절 실태조사 지표구성

제1절 실태조사 추진방향

[그림 3-1] 실태조사 추진방향



1.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 진단

-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준을 국가 단위의 기준¹²⁾에 준거하여 진단하고 문화다양성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2. 확대된 문화다양성 개념의 반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 단위 수준에서 실시하였던 조사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¹²⁾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의 결과값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2013) 연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7) 연구에서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였음.

- 특히, 문화다양성 개념이 다문화의 개념을 포괄한 개념임을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다문화(및 동화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도약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음.
- 더 이상 ‘소수자’를 대상으로, 또는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아닌, 시민과 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의미가 담긴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소수자 설문조사)는 생략하고,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을 ‘소수성’과 ‘표현의 다양성’에 주목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설문조사 시, ‘인사말 및 조사취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소수자일 수 있으며 다양한 표현방식을 갖은 개인이자 공동체임을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설문응답자들이 문항에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함(부록 ‘설문지’ 참고).

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시민인식 분석

- 기존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및 관련 연구들에서는 설문조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결과값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였음. 이는 중앙 정부 및 광역 단위의 조사가 갖는 한계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각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이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연령, 성별, 거주 지역, 소득수준, 문화예술지출비 용 등)에 따른 집단 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과 지역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구체적인 주요과제 도출에 활용하고자 함.

제2절 실태조사 지표 구성

1. 선행 지표연구 검토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 측정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지표값을 추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음.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2013)에서 개발한 시범지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것임(아래 [표 3-1]의 지표조사 틀 참고).
 - 지표는 크게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지표 항목은 다문화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소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에 대한 문화다양성 지표들로 구성됨.
- 각 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국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최종값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 통계자료 및 문헌조사로 확보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주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임.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국가 통계자료(청소년백서, 문화향수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를 분석하여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경향성을 파악함.
 - 모든 지표값을 설문조사만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기반, 현황과 같은 지표값은 신규통계 자료를 만들지 않고 기존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는 ‘행정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함.

[표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항목	
정책 지표	정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 수립 건수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규칙 수 	
	정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여건 지표	기반시설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자원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활동 지표	참여도	<p>(향유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향유활동 비용 문화예술 향유활동 참여도 	<p>(창조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조활동 소득 문화예술 창조활동 참여도
	친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비주류문화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향유활동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활동 관련 인프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조활동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창의성발현 여건 및 기회 만족도 문화예술 창조활동 관련 인프라 만족도
	포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조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조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인식 지표	친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호감정도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가능정도 	
	필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별 공공 지원예산 필요정도 	
	포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정도 	
	평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평등성 정도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2015.

□ 연구결과¹³⁾

- 정책지표 부문의 결과로 지방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수립·정책실행·정책예산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성소수자와 북한이탈주민, 비주류문화예술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집단 간 격차가 매우 커짐. 현재 한국사회의 소수자계층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여건지표 부문의 결과로는 소수자 집단별로 물리적 요소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음. 전국적으로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 요소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황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었으나 활동단체나 지원인력과 같은 인적자원 관련 자료는 매우 미흡하여 파악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 활동지표 부문의 결과로 참여도와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소수자는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실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고,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음. 11개의 소수자 집단 중에서 노인의 활동지표 점수가 가장 낮아,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사회적 여건이 노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미치지 못하였음.
- 인식지표 부문의 결과로 많은 국민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상적·관념적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소수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인식은 부족하였음. 11개 소수자 집단 중 국민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청소년과 노인이었음.
- 문화다양성지수 비교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문화 중심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만을 실시하여 소수자 집단별 정책과 여건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지방문화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가장 많이 실행됐지만 정책효과는 미흡하였음. 비주류 문화예술인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¹³⁾ 아래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음.

□ 연구의 시사점

- 첫째, 소수자 지원정책의 범위와 영역 확대가 필요함.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지원까지 소수자 지원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질적 만족도를 높여야 함.
- 둘째, 소수자 집단 간 지원 불균형의 완화 필요함. 특정 소수자 집단에 편중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소외계층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필요 있음.
- 셋째, 문화다양성 가치의 범사회적 확산이 필요함.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별로 행정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표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의 연구요약

구분	내용
연구목적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 진단 문화다양성 지표의 개념 정의와 조사대상 선정.
연구내용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의 특성과 한계 제시 2014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함.
연구방법	문화다양성 관련 국가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문화다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 수집 및 검토 문화 소외계층과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표 : 집단 간 격차가 매우 커짐. 현재 한국사회의 소수자계층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여건지표 : 소수자 집단별로 물리적 요소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수준이 서로 달랐음. • 활동지표 : 참여도와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인식지표 : 이상적·관념적 동의 수준은 높지만, 실제 수용 및 포용하는 인식은 부족, 11개 소수자 집단 중 청소년과 노인이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임. • 문화다양성지수 비교분석 결과 : 소수자 집단별 정책과 여건 차이됨
주요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지원까지 범위 확대 필요 • 소수자 집단 간 지원 불균형의 완화 필요 • 문화다양성 가치의 범사회적 확산 필요 •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자체별 행정자료 구축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2015.

2) 광주문화재단 -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¹⁴⁾

- 해당 연구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 차원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시민인식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함.
- 실태조사의 내용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소수자(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화다양성 정책, 개인의 성향으로 구성함(아래 표 참고).

[표 3-3] 광주문화재단(2016) 조사 항목 및 세부 문항

조사 항목	세부 문항
문화다양성의 인식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지도 •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인식 정도 • 문화다양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 •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정도 • 정부 및 공공부문 지원의 필요성 •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 정도 •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의향 •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참여 경험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사회적 소수자와의 거리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와의 지인관계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국적, 종교, 성소수자, 장애인, 연령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에 대한 수용 정도 • 사회적 소수자와 이웃관계에 대한 수용 정도 • 사회적 소수자와 직장동료관계에 대한 수용 정도 • 사회적 소수자와 가족관계에 대한 수용 정도 •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 노인들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참여 의향 • 노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14) 오주희·김재열·이창석·김남오(2016).『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

조사 항목	세부 문항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류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 비주류문화 관련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 비주류문화 활동가들에 대한 인식 • 비주류문화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문화다양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날에 대한 인지 정도 •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 • 2016년 무지개다리사업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찬반 여부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타 의견
개인의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정치적 성향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 문화예술활동 지출 비용
인구통계적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대 • 최종학력 • 거주 지역 • 종교 • 직업 • 혼인상태 • 연간 가족 총 소득

출처 : 오주희 외.『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16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그룹을 형성하여 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함.
- 주요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기 때문에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둘째, 사회적 소수자 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는 적극적 관점으

로 인식 전화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적 소수자나 비주류문화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2016년 시행 중인 무지개다리사업 9개 중 중요도를 묻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교육(20.5%)이 1위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조사 결과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음.
- 넷째,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 73.5%의 시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조례제정에 찬성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상위법의 취지를 전제로 광주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구성(별도의 상설기구, TF팀 구성)에 대한 의견과 문화다양성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 제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표 3-4] 광주문화재단(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구분	내용
연구목적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연구내용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소수자(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화다양성 정책, 개인의 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조사함.
연구방법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그룹을 형성하여 심층 면접(FGI)을 실시함.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지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시민들은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3.03)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시민들은 행사나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3.48)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3.06)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참여 및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을 참여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90명(31.5%),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11명(34.9%)으로 나타남. • 사회적 소수자와의 지인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59.3%), 다문화 이주민(36.4%), 북한 이탈주민(15.2%), 성소수자(1.7%)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2.73으로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2.68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행사나 프

구분	내용
	<p>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회 확대,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기회 확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 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 - 사회적 소수자나 비주류문화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 선행 •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시행 중인 무지개다리사업 9개 중 중요도를 묻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교육(20.5%)이 1위로 나타났고 전문가조사 결과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넷째,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73.5%의 시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조례제정에 찬성함. 관련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의 취지를 전제로 광주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되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과 문화다양성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 제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료 : 오주희 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16

2) 인천발전연구원(2017)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해당 연구는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 여건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와 소수자 집단의 활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둘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함.
 - 셋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여건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위해 먼저, 문화다양성의 개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여건(법, 정책, 사업)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시의 사회문화, 역사문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 현황을 조사하였음. 이 후 지표개발의 기본원칙, 지표 영역과 분류체계, 정책·여건·인식·활동지표를 제시하고(아래 [표 3-5] 참고)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해당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현황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지표 개발 연구인 만큼 실질적인 설문조사 등을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3-5] 인천시(2017) 문화다양성 지표 조사항목

지표	세부지표	조사항목
정책	정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조례·규칙·정책 수립 유무·건수
	정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 건수
	정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 예산
여건	시설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지원기관·시설 수
	자원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단체 수
	인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수(여성 비율)
활동 (소수자)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사업) 인지도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문화예술가가 체감하는 사회적 수용도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 시설·자원·인력 활용도
	평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평등도/차별도
인식 (일반)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인지도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수용도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참여도
	평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우선지원 필요도
	친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출처 : 최영화 외.『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2017.

□ 연구결과¹⁵⁾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의 조사항목은 지자체에서 2~3년 주기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측정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수집이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함.
 - 정책지표는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계획, 정책의 수립·실행 현황과 사업예산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건지표는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과 지원, 인력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동지표는 소수자와 소수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인천시의 소수자와 소수문화집단이 체감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소수자와 소

15) 아래 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2017)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음.

수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됨.

- 개발된 지표들을 추후 실질적으로 조사에 활용함으로써 인천시의 문화다양성의 실태 파악과 정책 발굴, 격차해소를 기대함. 또한 인천에서도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실시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지표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문화다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다양성 정책 발굴과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해당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연구의 시사점

- 첫째, 인천은 사회문화적, 역사문화적, 문화예술적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 수준만으로 문화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함.
- 둘째, 문화다양성 자원 조사를 위한 행정자료나 통계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화다양성의 양적·질적 실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함.
- 셋째, 해당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 수용도, 포용도, 평등도 등 전반적인 인식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음. 시민이 다양한 문화자원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 부정적 인식과 갈등요인 줄이고 긍정적 인식과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을 제안함.
- 넷째, 문화자원 현황만으로는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와 정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어렵고,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수준을 가늠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조사와 별개로 정책 마련의 근거로 제시할만한 타당성을 지닌 지표조사가 요구됨을 제시함.

[표 3-6] 인천발전연구원(2017)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구분	내용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을 통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의 개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여건(법, 정책, 사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인천시의 사회문화, 역사문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 현황 조사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연구 현황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결과	<p>[현황 분석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허브도시이자 관문도시, 국제도시, 해양도시임. 사회문화적으로 다국적 도시이자 남북한 접촉도시, 다문화 교육도시, 다종교도시임. 역사문화적으로 문화교류 및 교역의 거점도시임 문화예술적으로 인천은 디아스포라(이주) 도시이자 음악도시, 다문화 도시임. <p>[지표 개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표 :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계획, 정책의 수립·실행 현황과 사업예산의 규모를 조사 여건지표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과 자원, 인력 여건 파악 활동지표 : 소수자와 소수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인천시의 소수자와 소수문화집단이 체감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 파악 인식지표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소수자와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주요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부한 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문화다양성 자원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방안 필요 문화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 필요 자원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지표조사 필요

자료 : 최영화 외.『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2017.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국민 인식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그동안에 이루어진 정책 효과를 진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를 위해 2015년 개발된 지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 평가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를 개선함.
 -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현황, 소수자 활동운영, 관련 시설 및 제도현황의 정책 인프라 부문, 정책 제도 개선방향 및 전략 등 크게 4부분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함.
 - 대국민 인식조사의 경우, 목표표본은 2,100명으로 설정하고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수자 인식조사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각 300명씩 할당하여 총 9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음.
 -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의 제반여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행정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였음.

[표 3-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 조사 분석의 틀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항목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인식지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문화다양성 가치 평가
		필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 문화와의 거리감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효과성 평가
		포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소수자 집단 수용도 • 소수자에 대한 차별정도 인지도
소수자의 문화 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	활동지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친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포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소수문화 수용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정책지표	정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항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		정책실행	•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 사업 수
		정책예산	• 문화다양성 예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인력	여건	기반시설여건	•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자원여건	•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인력 수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2017b, p.80.

□ 연구결과¹⁶⁾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해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70%이상,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43~50%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에,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현 사회에 만연한 등급화, 권위주의적 차별의식 등을 극복해야하며,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평등주의 사고 함양 등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국민 인식확대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차원에서 여러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의 후원 및 콘텐츠 보급 추진이 필요함.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참여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화산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활동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평가 및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는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외국인근로자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결혼이주민 대상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생활공동체 단위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수요 지향적 정책시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과 우리 사

16) 아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음.

회 수용도가 높은 편이며, 차별정도는 낮은 편으로 조사됨. 세 소수집단 중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심 향상을 위해 생활 지원보다는 고용을 연계한 지원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함.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의 배타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성소수자에 거부감은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 62.8%로 조사됐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 인식은 76.7%로 나타나,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최소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이 16%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2.6%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함.
- 다양한 소수문화의 문화향유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화 간 소통과 교류 확대로 다양성 이해를 증진시켜야 함. 사회현상의 개선을 위한 중재자 활성화 방안 추진과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연구의 시사점

-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였음.
- 첫째, 문화다양성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기 때문에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컨트롤타워 설치가 매우 시급하며, 컨트롤타워를 통해 예산확보, 문화다양성 지침서 개발, 정책 담당자 대상 교육, 중복 및 유사 사업 개선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별로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인지한다면 양질의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
 -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제도 도입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양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표 3-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구분	내용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현황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파악 • 사회적 소수자집단의 사회에 대한 인식 현황 조사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개발된 지표조사의 검토를 통한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개선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설문조사 대국민 인식조사(2,100명) • 소수자 인식조사(900명))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에,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이주민 대상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생활공동체 단위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및 우리 사회 수용도가 높은 편이며, 차별정도는 낮은 편으로 조사됨. • 성소수자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 최소 권리보장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이 16%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2.6%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 다양한 소수문화의 문화향유권 최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요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트롤타워를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통합연계성 확보 • 민간단체 포함한 정책협의회 운영하여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필요 •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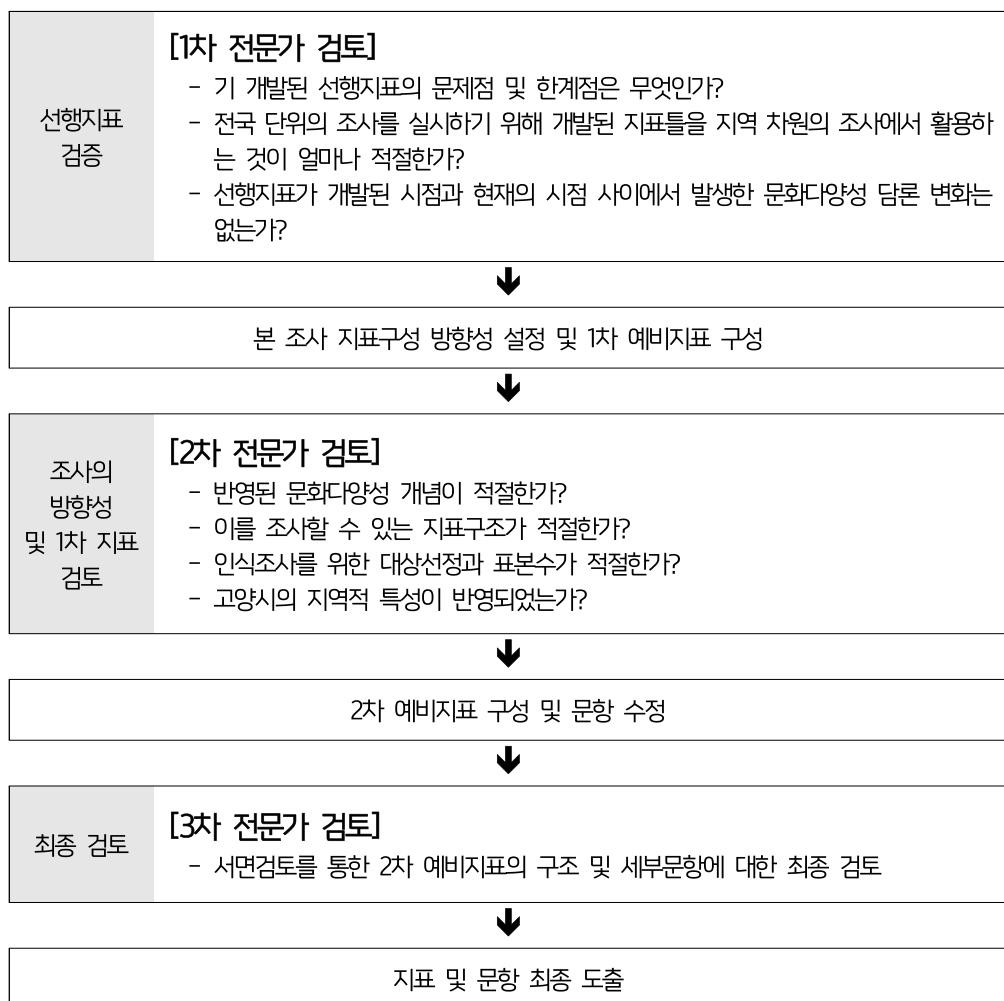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2017b, p.80.

2. 지표의 구성

1) 자문회의를 통한 지표구성 과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의 조사틀을 기준으로 이에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적용 및 활용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음.
- 검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9] 지표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과정



2) 지표 구성의 원칙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의 비교가능

- 기준에 실시된 국가단위, 광역단위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는 대체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의 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기준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조사의 틀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15년도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와 2017년도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문화다양성 개념 범위의 조정 (다문화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

- 본 연구에서 기준의 연구보고서의 조사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선행된 연구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의 변화 및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담론 변화들을 담고자 하였음.
- 이는 조사를 위한 지표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보완하였음.

조사대상의 조정 (일반시민 중심)

-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소수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는 ‘소수성’에 주목하며 다른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는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의 ‘소수성’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문항에서 기준에 ‘소수자’라고 지칭되었던 집단에 대한 설명을 ‘00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음.

지역성 (지역의 사회·문화적 현상 반영)

-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광의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 요

소가 작용하며, 협의의 질문(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일수록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때문에 국가 및 광역단위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문항들을 고양시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응답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조사들을 기본 토대로 하면서도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의 삶에 관련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양시에 적용 및 활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조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3) 지표 확정

- 위와 같은 과정 및 구성 원칙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3-10] 본 연구에서의 지표구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b)	2019 본 연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여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노인		타 종교인	아동
전통문화		-	청소년
지방문화		-	여성
대안문화예술		성별 불평등	노인
독립문화예술		-	국적/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독신가구의 증가	종교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4대 지표 (정책, 여건, 활동, 인식)		주류 문화예술 독점	장애인차별
		전통문화 위기	고양시 내 지역갈등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세대 간 갈등
		-	주류 문화예술 독점
		-	전통문화 위기
		-	-
		4대 지표 (정책, 여건, 활동, 인식)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고양시 지역 간 문화차이
			고양시 문화적 정치성 부재
			고양시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
			3대 지표 (정책, 여건, 인식)

제 4 장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문화다양성 지원 정책 분석

제3절 문화다양성 기반 여건 분석

제4절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분석

제5절 소결

제1절 조사 개요

1.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분석에 대한 조사내용 및 방법

- 지원 정책 분석은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으로 현황을 파악함.
 - 정책수립은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규칙의 수를 수집함. 정책실행은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를 수집함. 정책예산은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지원예산을 수집함.
- 기반 여건 분석은 기반시설 여건, 문화기반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던 기관·시설의 수를 수집함.

[표 4-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세부지표 항목

지표			조사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항목	
지원정책	정책수립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규칙의 수	현황자료분석
	정책실행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	
	정책예산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지원예산	
기반여건	기반시설 여건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2. 시민인식 분석에 대한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목적 및 설계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고양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조사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고양시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통계비율을 반영한 표본배분 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추출 하였으며, 고양시 근무자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양시 내 사업체에서 근무 및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표본추출 하였음.

[표 4-2] 고양시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조사_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거주자 :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 고양시 근무자 : 경기도 고양시 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양시 내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상자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거주자 : 주민등록 인구 통계 비율을 반영한 표본배분 (2019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명(고양시 거주자 670명, 고양시 근무자 130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5월 9일~5월 23일 (15일)

2) 조사 내용

-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 조사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7b) 연구보고서의 조사들을 토대로 자문회의를 거쳐 구조화되었으며, 최종적인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설문지 참조)

[표 4-3] 고양시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조사_조사 내용

구분	내용		
1. 문화 다양성 인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인지 여부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필요성 - 고양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2. 고양시 내의 차별과 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로서 차별 경험 - 각 구성원들에 대한 거리감 - 소수자 인식 여부 -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 -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3. 문화예술적 참여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행동 참여 정도 - 참여 중인 문화예술 활동과 방식 - 문화예술행동 향유의 걸림돌 - 문화예술행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 -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4.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수용 정도 		
5. 응답자 특성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거주지역 - 학력 - 혼인상태 - 거주 혹은 근무 기간 - 직업 - 소득 </td><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거주지역 - 학력 - 혼인상태 - 거주 혹은 근무 기간 - 직업 -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거주지역 - 학력 - 혼인상태 - 거주 혹은 근무 기간 - 직업 -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3) 응답자 특성

[표 4-4] 고양시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조사_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800)	100.0
거주여부	거주자	(670)	83.8
	근무자	(130)	16.3
성별	남성	(367)	45.9
	여성	(433)	54.1
연령	19~29세	(174)	21.8
	30대	(194)	24.3
	40대	(232)	29.0
	50대	(162)	20.3
	60대 이상	(38)	4.8
거주지역	일산 동구	(180)	26.9
	일산 서구	(186)	27.8
	덕양구 남부	(175)	26.1
	덕양구 북부	(129)	19.3
근무지역	일산 동구	(64)	49.2
	일산 서구	(24)	18.5
	덕양구 남부	(13)	10.0
	덕양구 북부	(29)	22.3
학력별	고졸 이하	(129)	16.1
	대학	(594)	74.3
	대학원 이상	(77)	9.6
혼인상태별	기혼	(477)	59.6
	미혼	(318)	39.8
	기타	(5)	.6
종교별	기독교	(203)	25.4
	천주교	(102)	12.8
	불교	(82)	10.3
	기타	(1)	.1
	무교	(412)	51.5
고양시 거주기간별	5년 미만	(106)	15.8
	5년 이상~10년 미만	(122)	18.2
	10년 이상~20년 미만	(243)	36.3
	20년 이상~30년 미만	(174)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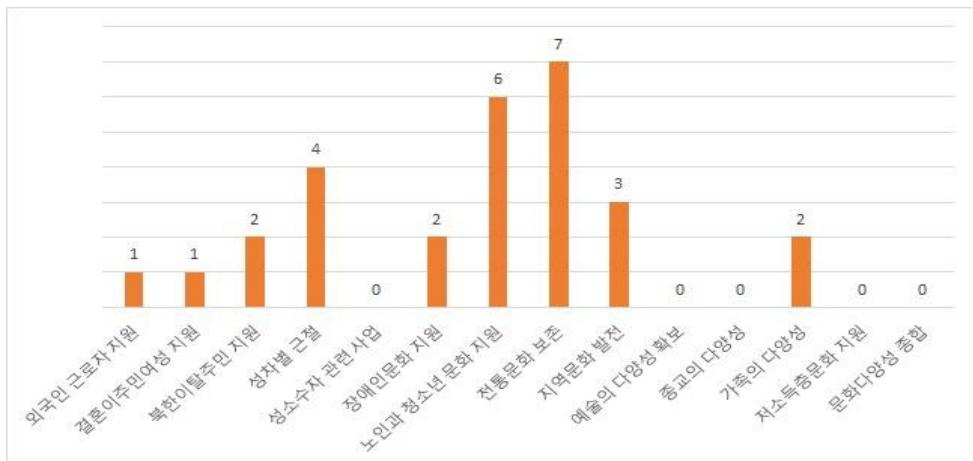
		시례수	%
고양시 근무기간별	30년 이상	(25)	3.7
	1년 미만	(13)	10.0
	1년 이상~3년 미만	(30)	23.1
	3년 이상~5년 미만	(34)	26.2
	5년 이상~10년 미만	(24)	18.5
	10년 이상	(29)	22.3
직업별	화이트칼라	(514)	64.3
	블루칼라	(98)	12.3
	주부	(87)	10.9
	학생	(73)	9.1
	무직/기타	(28)	3.5
소득별	소득 없음	(43)	5.4
	200만원 미만	(142)	17.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7)	25.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6)	30.8
	500만원 이상	(162)	20.3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별	지출하지 않음	(23)	2.9
	1만원 미만	(46)	5.8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42.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29.8
	10만원 이상	(150)	18.8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9.6
	없다	(723)	90.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12.0
	없다	(704)	88.0
문화다양성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16.0
	인지	(672)	84.0

제2절 문화다양성 지원 정책 분석

1. 정책수립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조례·규칙은 '전통문화 보존'이 가장 많음
 - 전통문화 보존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6건, 성차별 균절 4건, 지역문화 발전 3건순으로 나타남.
 -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의 경우 고양시 노인에 관한 조례와 규칙 2건, 고양시 청소년에 관한 조례와 규칙 4건으로 구성되었음.
 - 가족의 다양성의 경우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고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구성되었음.
 - 고양시는 성소수자, 종교, 저소득층 문화지원을 비롯해 대안문화예술이나 독립문화 예술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문화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었음.

[그림 4-1]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표 4-5]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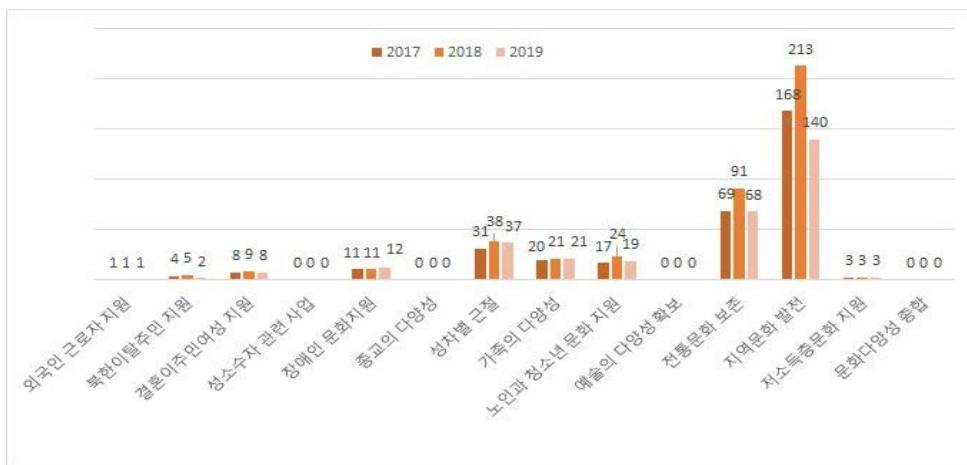
구분	조례·규칙의 수	조례·규칙
외국인 근로자 지원	1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1	
북한이탈주민 지원	2	· 고양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성차별 근절	4	·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성소수자 관련 사업	0	
장애인문화 지원	2	·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6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통문화 보존	7	·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지역문화 발전	3	·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예술의 다양성 확보	0	
종교의 다양성	0	
가족의 다양성	2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저소득층문화 지원	0	
문화다양성 종합	0	

2. 정책실행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발전'이 가장 많음

- 지역문화 발전이 5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228건, 성차별 균절 106건, 가족의 다양성 62건,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60건¹⁷⁾ 순으로 나타남.
- 가족의 다양성의 경우 장애인 가족,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중복집계 되었기 때문에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남.
- 고양시는 외국인 근로자 3건, 저소득층 문화 지원 9건, 북한이탈주민 11건, 결혼이주 여성 지원 25건, 장애인 문화 지원 34건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성소수자, 종교를 비롯해 대안문화예술이나 독립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사업 수



¹⁷⁾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은 노인과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의 수를 합쳐서 산출함.

[표 4-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사업 수

구분	외국인 근로자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결혼 이주민 여성 지원	성 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 지원	종교의 다양성	성차별 근절	가족의 다양성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예술의 다양성 확보	전통 문화 보존	지역 문화 발전	저소득 층문화 지원	문화 다양성 종합
2017	1	4	8	0	11	0	31	20	17	0	69	168	3	0
2018	1	5	9	0	11	0	38	21	24	0	91	213	3	0
2019	1	2	8	0	12	0	37	21	19	0	68	140	3	0
합계	3	11	25	0	34	0	106	62	60	0	228	521	9	0

[표 4-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사업의 예

구분	지원 사업의 수	지원 사업의 예
외국인 근로자 지원	3	·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2019)
북한이탈주민 지원	11	·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2018)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25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2017)
성소수자 관련 사업	0	
장애인 문화지원	34	· 수화통역센터운영(2019)
종교의 다양성	0	
성차별 근절	106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2018)
가족의 다양성	62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2017)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60	· 실버탈출 언제나 청춘 교실 운영(2019)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2019)
예술의 다양성 확보	0	
전통문화 보존	228	· 서원에서 배우는 우리기락(행주서원)(2018)
지역문화 발전	521	· 2017 고양호수예술축제(2017)
저소득층문화 지원	9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2019)
문화다양성 종합	0	

3. 정책예산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지원 예산은 '지역문화 발전'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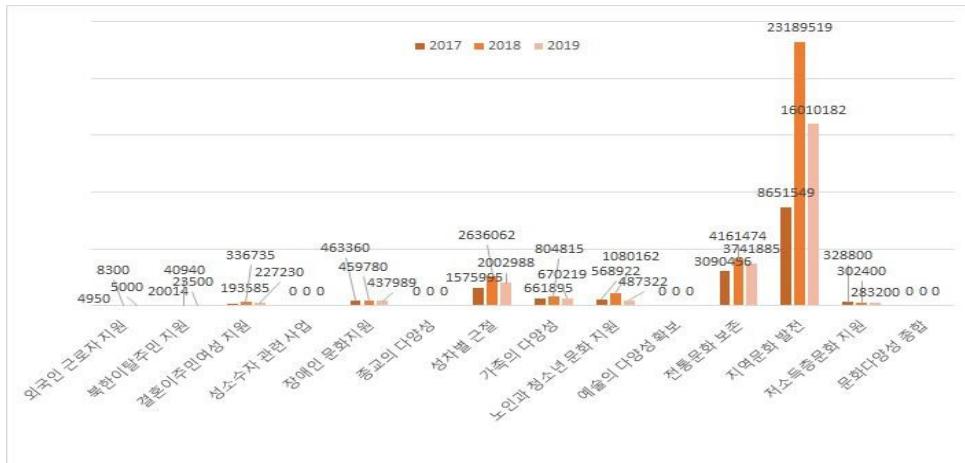
-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지원 예산은 지역문화 발전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지역문화 발전이 약 47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문화 보존이 약 109억 원, 성차별 균절이 약 62억 원, 가족의 다양성 약 21억 원,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이 약 21억 원으로 나타남.
- 타 부문 활동 지원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약 1800만 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약 8400만 원, 결혼이주민여성 약 7억 원, 저소득층 문화 지원 약 9억 원, 장애인 문화 지원 약 13억 원으로 예산이 적게 나타남.

□ 고양시는 소수자와 관련된 활동 지원 예산과 지역문화 발전·전통문화 보존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성소수자, 종교를 비롯해 대안문화예술이나 독립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 지원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다양성을 아우르는 활동 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까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활동과 지원 받지 못했던 대상들을 정책적 범위 안으로 포함시킬 필요 있음.
- 최근 3개년 예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소수자(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07%로 적은 실정임. 소수자를 비롯해서 여성, 청소년과 노인의 문화 활동 지원 예산을 합해도 14.59%임. 지역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예산 비중이 81.20%인 것을 감안 했을 때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지역문화 발전, 전통문화 보존과 소수자 간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그림 4-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예산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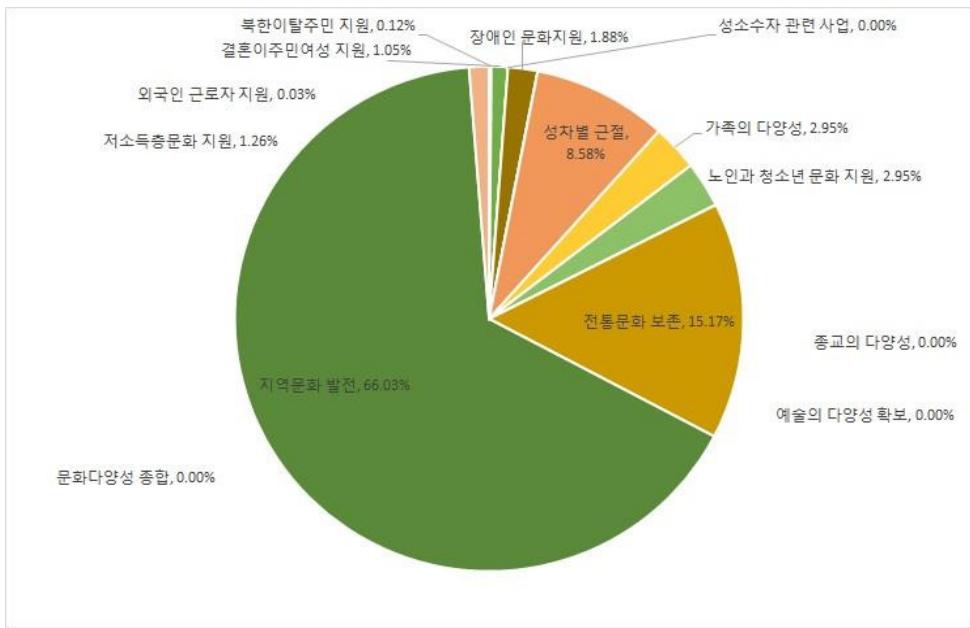


[표 4-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지원 예산

(단위 :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합계
외국인 근로자 지원	4,950	8,300	5,000	18,250
북한이탈주민 지원	20,014	40,940	23,500	84,454
결혼이주여성 지원	193,585	336,735	227,230	757,550
성소수자 관련 사업	0	0	0	0
장애인 문화지원	463,360	459,780	437,989	1,361,129
종교의 다양성	0	0	0	0
성차별 극복	1,575,995	2,636,062	2,002,988	6,215,045
가족의 다양성	661,895	804,815	670,219	2,136,929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568,922	1,080,162	487,322	2,136,406
예술의 다양성 확보	0	0	0	0
전통문화 보존	3,090,456	4,161,474	3,741,885	10,993,815
지역문화 발전	8,651,549	23,189,519	16,010,182	47,851,250
저소득층문화 지원	328,800	302,400	283,200	914,400
문화다양성 종합	0	0	0	0

[그림 4-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대상 간 지원예산 비율



제3절 문화다양성 기반 여건 분석

1. 기반시설 여건

- 고양시는 55개의 부서에서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함
- 지역문화 발전은 55개의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함. 그 다음에는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에 10개의 기관이, 전통문화 보존에 7개의 기관이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함.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로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반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성차별 균절은 여성가족과 1곳, 장애인 문화지원은 장애인 복지과 1곳에서 정책 및 사업이 수행됨. 성소수자 관련 사업, 종교의 다양성 관련 사업, 예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정책 및 사업 수행에 있어 문화다양성 관련 집단 간 편차가 나타남.

[표 4-9]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구분	기관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성가족과(1곳)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マイ스산업과, 주민자치과, 문화예술과(3곳)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2곳)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성소수자 관련 사업	-	-
장애인 문화지원	장애인복지과(1곳)	사회복지
종교의 다양성	-	-
성차별 균절	여성가족과(1곳)	사회복지
가족의 다양성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3곳)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マイ스산업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센터 일산동 구도서관과, 주엽1동, 식사동, 풍산동(10곳)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구분	기관	분야
예술의 다양성 확보	-	-
전통문화 보존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위생정책과, 주민자치과, 시민안전과, 관산동(7곳)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보건
지역문화 발전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첨단산업과, 신한류관광과,マイ스산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원산동, 흥도동, 성사1~2동,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1~2동, 행주동, 행신1~3동, 대덕동,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2동, 마두1~2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1~3동, 탄현동, 주엽1~2동, 대화동, 송산동(55곳)	교육,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저소득층문화 지원	일산동구 가족복지과,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덕양구 가정복지과(3곳)	사회복지

□ 문화다양성 관련한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활동 지원 사업은 주로 고양시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소수자 및 소수문화와 관련한 문화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있음.
- 전통문화 보존 관련해서는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원이 있고,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해서는 고양문화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고양관광안내센터, 고양관광정보센터가 있음.
- 청소년 관련해서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있으며, 노인과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경로당이 있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음.

-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여성새일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저소득층을 비롯해 예술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공공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없었음.

[표 4-10]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구분	시설
외국인 근로자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	-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소수자 관련 사업	-
장애인 문화지원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교의 다양성	-
성차별 근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여성새일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가족의 다양성	-
노인과 청소년 문화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경로당
예술의 다양성 확보	-
전통문화 보존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원
지역문화 발전	고양문화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고양관광안내센터, 고양관광정보센터
저소득층문화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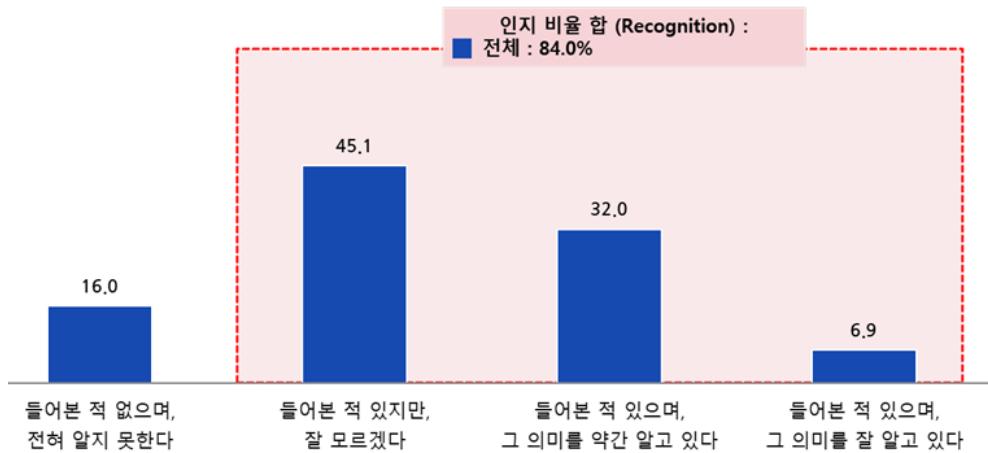
제4절 문화다양성 시민 인식 분석

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 문화다양성 인지 여부

- 고양시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하여 인지(84.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거나’(45.1%) ‘약간 알고 있는 정도’(32.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 여부(전체)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근무자(76.9%)보다 거주자(85.4%)가, 남성(83.4%)보다 여성(84.5%)이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92.1%), 거주 지역별로는 덕양구 남부권(88.6%) 시민들이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월 평균 문화예술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인지율(65.2%)보다 지출비용이 높은 사람들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1]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 여부(응답자 특성별)

		n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알지 못함(%)	인지하고 있음(%)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르겠음(%)	들어본 적 있으며, 그 의미를 약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음(%)	
전체		800	16.0	84.0	45.1	32.0	6.9
성별	남자	367	16.6	83.4	42.2	33.8	7.4
	여자	433	15.5	84.6	47.6	30.5	6.5
연령	20대	174	17.8	82.2	40.2	32.8	9.2
	30대	194	16.5	83.5	43.3	31.4	8.8
	40대	232	18.1	81.9	46.1	30.2	5.6
	50대	162	12.3	87.7	51.2	30.9	5.6
	60대 이상	38	7.9	92.1	44.7	47.4	0.0
	거주	거주자*	14.6	85.4	45.5	32.4	7.5
여부	근무자**	130	23.1	76.9	43.1	30.0	3.8
	일산 동구	180	17.8	82.1	39.4	33.3	9.4
거주	일산 서구	186	11.8	88.1	47.8	31.2	9.1
	덕양구 남부	175	11.4	88.6	46.9	36.0	5.7
지역	덕양구 북부	129	18.6	81.4	48.8	27.9	4.7
	소득없음	43	14.0	86.0	41.9	23.3	20.9
소득별	200만원 미만	142	19.0	81.0	44.4	31.7	4.9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16.4	83.6	48.8	28.5	6.3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16.3	83.7	45.5	33.7	4.5
	500만원 이상	162	13.0	87.0	41.4	36.4	9.3
직업별	화이트칼라	514	15.6	84.4	46.5	32.1	5.8
	블루칼라	98	24.5	75.5	41.8	28.6	5.1
	주부	87	11.5	88.5	47.1	36.8	4.6
	학생	73	15.1	84.9	37.0	28.8	19.2
	무직/기타	28	10.7	89.3	46.4	35.7	7.1
	지출하지 않음	23	34.8	65.2	39.1	26.1	0.0
월 평균	1만원 미만	46	15.2	84.8	47.8	32.6	4.3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19.5	80.5	46.9	29.7	3.8
문화예술비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12.6	87.4	46.2	31.1	10.1
	10만원 이상	150	10.7	89.3	39.3	39.3	10.7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유	77	7.8	92.2	37.7	42.9	11.7
	무	723	16.9	83.1	45.9	30.8	6.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유	96	6.3	93.8	41.7	43.8	8.3
	무	704	17.3	82.7	45.6	30.4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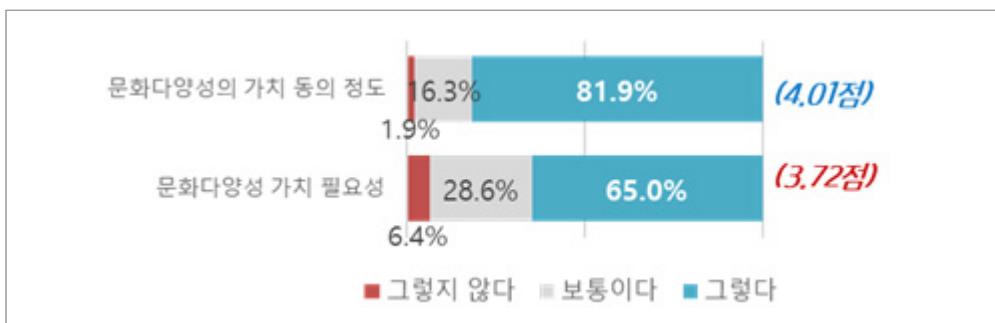
*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 고양시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고양시 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와 필요성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와 지역에의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각각 5점 환산 평균 점수 기준으로 4.01점, 3.72점인 것으로 나타남.
- 동의하는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 정도 및 지역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소득,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p<.05$)
 - 상별로는 여성(77.14점)이 남성(72.75점) 보다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하여 높은 점수로 동의하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P=.045$).
 - 연령별로는 20대(78.16점), 30대(75.39점), 50대(75.15점), 60대 이상(74.34점), 40대(72.74점)의 순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50대($p=.045$)로 집단 차이를 보임.
 - 거주여부, 거주 지역에 따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응답자 특성별)

		n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	M	p	post-hoc
전체		800	1.9	16.3	81.9	75.13	-	-
성별	a. 남자	367	3.5	18.0	78.5	72.75	.000*	-
	b. 여자	433	0.5	14.8	84.8	77.14		
연령	a. 20대	174	1.7	12.6	85.6	78.16	.045*	a>c
	b. 30대	194	1.5	19.1	79.4	75.39		
거주	c. 40대	232	3.0	17.7	79.3	72.74	.182	-
	d. 50대	162	0.6	16.7	82.7	75.15		
여부	e. 60대 이상	38	2.6	7.9	89.5	74.34	.780	-
	a. 거주자	670	1.6	16.0	82.4	75.49		
지역	b. 근무자	130	3.1	17.7	79.2	73.27	.001*	a>d
	a. 일산 동구	180	2.8	15.6	81.7	75.00		
거주	b. 일산 서구	186	1.6	14.0	84.4	75.13	.016*	c>a
	c. 덕양구 남부	175	1.7	15.4	82.9	76.14		
소득별	d. 덕양구 북부	129	0.0	20.2	79.8	75.78	.000*	-
	a. 소득없음	43	4.7	4.7	90.7	83.14		
월 평균	b. 200만원 미만	142	1.4	15.5	83.1	76.94	.188	-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0.5	17.4	82.1	75.85		
문화예술비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3.3	18.3	78.5	72.36	.001*	-
	e. 500만원 이상	162	1.2	15.4	83.3	74.69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4.3	43.5	52.2	64.13	.000*	-
	b. 1만원 미만	46	0.0	19.6	80.4	75.00		
문화예술비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1.2	16.6	82.2	75.36	.000*	-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2.1	12.6	85.3	76.68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e. 10만원 이상	150	3.3	16.0	80.7	73.83	.000*	-
	유	77	2.6	10.4	87.0	77.6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무	723	1.8	16.9	81.3	74.86	.001*	-
	유	96	2.1	8.3	89.6	79.43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무	704	1.8	17.3	80.8	74.54	.000*	-
	비인지	128	3.1	31.3	65.6	68.36		
	인지	672	1.6	13.4	85.0	76.41		

* p<.05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 유무,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p<0.05).

– 남성(64.58점)보다 여성(70.67점)이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0$).

- 월 평균 문화예술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지출하는 응답자들에 비하여 문화다양성 가치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01$).
- 연령, 거주 지역,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P>0.05$).

[표 4-13]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필요성(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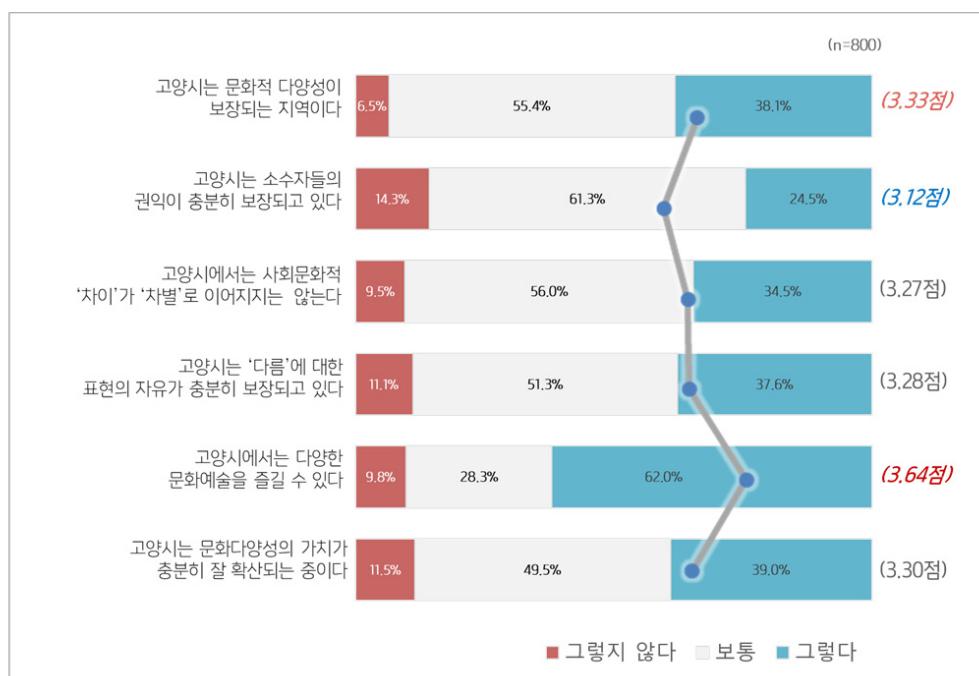
		<i>n</i>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i>M</i>	<i>p</i>	<i>post-hoc</i>
	전체	800	6.4	28.6	65.0	67.88	-	-
성별	a. 남자	367	9.8	31.3	58.9	64.58	.000*	-
	b. 여자	433	3.5	26.3	70.2	70.67		
연령	a. 20대	174	4.6	28.2	67.2	71.12	.258	-
	b. 30대	194	8.2	33.0	58.8	65.34		
거주	c. 40대	232	6.5	24.6	69.0	68.00	.563	-
	d. 50대	162	4.9	32.1	63.0	67.44		
	e. 60대 이상	38	10.5	18.4	71.1	67.11		
여부	a. 거주자	670	6.4	28.1	65.5	68.06	.553	-
	b. 근무자	130	6.2	31.5	62.3	66.92		
거주	a. 일산 동구	180	4.4	30.0	65.6	69.58	.064	-
	b. 일산 서구	186	7.0	29.6	63.4	66.53		
지역	c. 덕양구 남부	175	7.4	28.6	64.0	67.00	.024*	a<b,c,d,e
	d. 덕양구 북부	129	7.0	22.5	70.5	69.57		
소득별	a. 소득없음	43	4.7	23.3	72.1	74.42	.009*	-
	b. 200만원 미만	142	4.9	29.6	65.5	69.72		
	c. 200만원~300만원 미만	207	7.7	27.1	65.2	67.03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6.1	29.7	64.2	66.57		
	e. 500만원 이상	162	6.8	29.6	63.6	67.59		
월 평균	a. 지출하지 않음	23	26.1	43.5	30.4	51.09	.001*	-
	b. 1만원 미만	46	4.3	32.6	63.0	67.93		
문화 예술비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4.7	31.5	63.8	67.71	.000*	-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6.7	21.8	71.4	70.06		
지출액	e. 10만원 이상	150	7.3	29.3	63.3	67.33	-	-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유	77	2.6	19.5	77.9	73.7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무	723	6.8	29.6	63.6	67.25	.001*	-
	유	96	1.0	21.9	77.1	73.44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무	704	7.1	29.5	63.4	67.12	.000*	-
	비인지	128	10.2	37.5	52.3	61.91		
	인지	672	5.7	26.9	67.4	69.01		

* $p<.05$

3)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질문에서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이 3.64점(5점 환산 점수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고양시는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다’(3.33점), ‘고양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3.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고양시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문항에 대하여는 가장 인식이 낮게 나타남(3.27점).

[그림 4-7]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P<.05$).

[표 4-14]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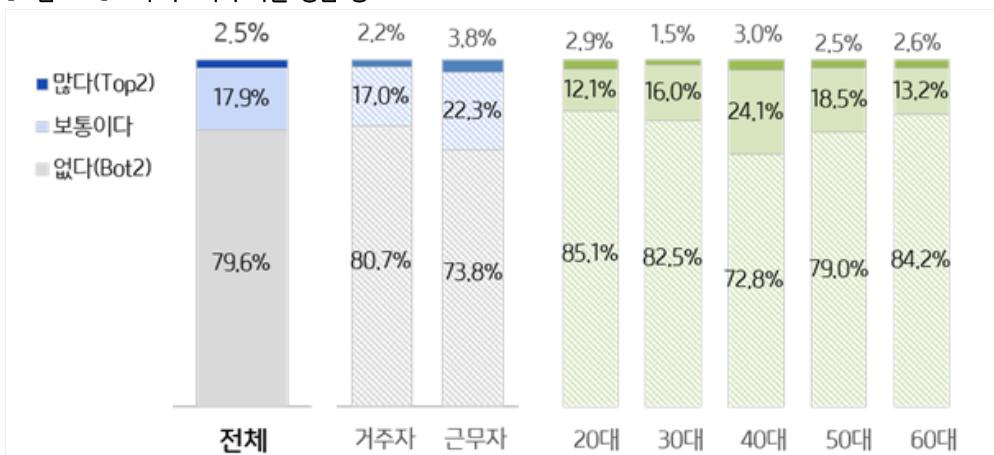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n	문화다양성이 보장됨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됨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음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음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잘 확산되는 중임		
		전체	800	58.22	53.00	56.63	57.09	65.94	57.53
성별	a. 남자	367	57.90	53.61	57.63	58.51	66.55	57.02	
	b. 여자	433	58.49	52.48	55.77	55.89	65.42	57.97	
연령	a. 20대	174	61.21	55.03	56.90	59.05	74.28	60.20	
	b. 30대	194	58.25	52.58	56.70	58.25	68.17	58.63	
	c. 40대	232	56.47	52.26	54.96	55.17	62.39	55.28	
	d. 50대	162	58.49	53.24	58.33	56.48	60.19	57.56	
	e. 60대 이상	38	53.95	49.34	57.89	56.58	62.50	53.29	
거주	a. 거주자	670	58.32	52.69	56.57	57.05	66.04	57.61	
여부	b. 근무자	130	57.69	54.62	56.92	57.31	65.38	57.12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60.00	54.58	58.33	58.75	67.36	59.31	
	b. 일산 서구	186	57.26	51.21	55.51	56.05	65.86	57.53	
	c. 덕양구 남부	175	58.71	53.14	56.86	58.14	67.43	58.14	
	d. 덕양구 북부	129	56.98	51.55	55.23	54.65	62.60	54.65	
소득별	a. 소득없음	43	62.21	55.81	63.95	60.47	76.74	61.05	
	b. 200만원 미만	142	58.63	54.58	54.75	56.34	67.78	58.45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58.21	53.74	57.61	57.73	67.27	57.97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57.83	50.81	55.49	56.91	63.92	56.30	
	e. 500만원 이상	162	57.41	53.24	56.79	56.33	62.81	57.10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46.74	44.57	51.09	46.74	51.09	41.30	
	b. 1만원 미만	46	53.80	48.37	51.63	52.72	64.13	54.89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58.31	53.13	56.71	57.07	65.89	58.53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59.56	54.52	58.72	58.82	67.23	57.56	
	e. 10만원 이상	150	59.00	53.00	55.50	57.33	66.83	58.50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62.01	62.34	62.01	62.34	73.70	65.26	
	없다	723	57.81	52.01	56.05	56.54	65.11	56.7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62.76	58.33	60.16	61.46	71.88	64.58	
	없다	704	57.60	52.27	56.14	56.50	65.13	56.57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53.52	49.22	55.66	53.13	60.74	52.73	
	인지	672	59.11	53.72	56.81	57.85	66.93	58.44	

2. 고양시 내의 차별과 소수자

1) 소수자로서 차별 경험

- 고양시에서 거주 혹은 상주하는 동안 소수자로서 차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9.6%가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4-8] 소수자로서의 차별 경험 정도



-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수자로서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보통’이거나 ‘많은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거주자는 19.2%인 반면, 근무자는 26.1%로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는 차별경험이 40대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남($p=.030$).

- 차별 경험이 ‘전혀 없다’에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n=520$)에게 차별경험의 원인을 물은 결과, 소득수준의 차이(40.8%), 연령/세대의 차이(39.0%), 성별의 차이(27.1%), 지역출신의 차이(14.2%)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9] 차별의 원인



[표 4-15] 소수자로서 차별 경험(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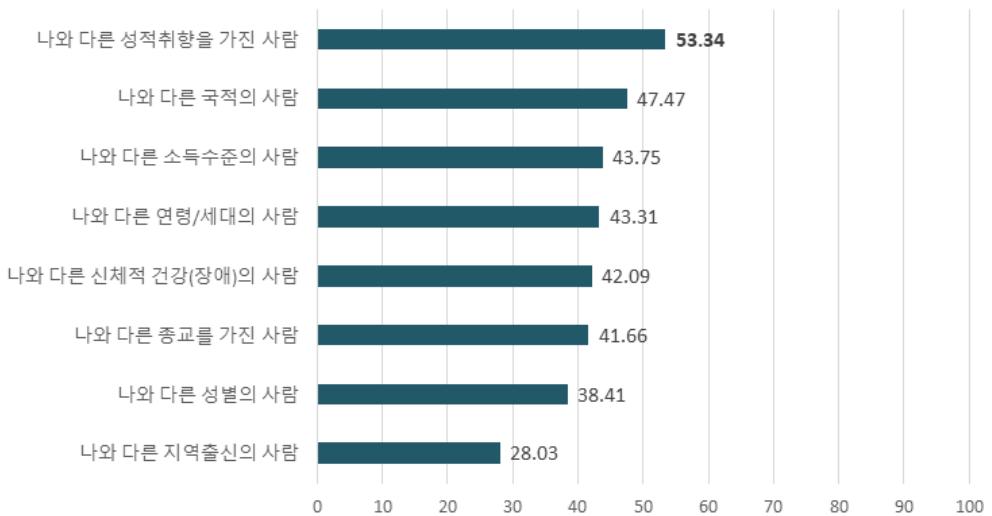
		n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M	p	post-hoc
	전체	800	79.6	17.9	2.5	22.16	-	-
성별	a. 남자	367	79.8	16.9	3.3	21.25	0.249	-
	b. 여자	433	79.4	18.7	1.8	22.92		
연령	a. 20대	174	85.1	12.1	2.9	19.97	0.030*	c>a c>b
	b. 30대	194	82.5	16.0	1.5	19.85		
거주	c. 40대	232	72.8	24.1	3.0	25.43		
	d. 50대	162	79.0	18.5	2.5	22.53		
	e. 60대 이상	38	84.2	13.2	2.6	22.37		
여부	a. 거주자	670	80.7	17.0	2.2	21.64	0.102	-
	b. 근무자	130	73.8	22.3	3.8	24.81		
지역	a. 일산 동구	180	81.1	13.9	5.0	21.53	0.706	-
	b. 일산 서구	186	80.1	18.8	1.1	22.58		
	c. 덕양구 남부	175	84.0	14.3	1.7	20.57		
	d. 덕양구 북부	129	76.7	22.5	0.8	21.90		
소득별	a. 소득없음	43	93.0	7.0	0.0	13.95	0.061	-
	b. 200만원 미만	142	80.3	17.6	2.1	22.71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77.8	20.3	1.9	22.83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77.6	18.7	3.7	23.48		
	e. 500만원 이상	162	80.9	16.7	2.5	20.99		
월 평균 문화 예술비	a. 지출하지 않음	23	80.9	16.7	2.5	20.99	0.214	-
	b. 1만원 미만	46	60.9	34.8	4.3	30.43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82.6	17.4	0.0	20.11		
지출액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82.5	15.7	1.7	21.28	-	-
	e. 10만원 이상	150	80.3	17.2	2.5	22.06		
	문화다양성 사업 및 참여 여부별	있다	77	74.0	21.3	4.7	23.6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없다	723	74.0	23.4	2.6	25.00	0.426	-
	있다	96	80.2	17.3	2.5	21.85		
	없다	704	75.0	21.9	3.1	23.70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80.3	17.3	2.4	21.95	0.177	-
	인지	672	81.3	15.6	3.1	19.73		

* p<.05

2) 각 구성원들에 대한 거리감

- 각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나와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거리감이 5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나와 다른 국적의 사람’(47.47점), ‘나와 다른 소득 수준의 사람’(43.7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성별이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거리감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특성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 남자(35.76점)보다 여자(40.65점)에게 ‘나와 다른 성별’에 대한 거리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3$).
 - 20대 시민들에 비하여, 40대 이상의 시민들은 ‘다른 지역 출신’,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대 시민들은 ‘나와 다른 성적 취향의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도 다른 연령대의 시민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6]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다른 국적	다른 지역 출신	다른 연령/ 세대	다른 성별	다른 성적 취향	다른 신체적 건강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
	전체	800	47.47	28.03	43.31	38.41	53.34	42.09	41.66	43.75
성별	a. 남자	367	46.12	28.20	43.12	35.76	54.09	42.10	41.01	43.73
	b. 여자	433	48.61	27.89	43.48	40.65	52.71	42.09	42.21	43.76
연령	a. 20대	174	43.10	20.40	44.25	35.34	46.55	41.52	36.35	37.21
	b. 30대	194	48.58	26.16	43.43	35.82	52.96	41.88	40.21	44.46
	c. 40대	232	50.22	31.36	43.86	42.13	57.76	45.04	46.34	45.58
	d. 50대	162	46.91	32.87	42.75	39.66	53.09	39.20	42.13	45.99
	e. 60대 이상	38	47.37	31.58	37.50	37.50	60.53	40.13	42.76	49.34
거주 여부	a. 거주자	670	47.09	27.69	42.95	38.25	53.10	41.53	41.42	43.69
	b. 근무자	130	49.42	29.81	45.19	39.23	54.62	45.00	42.88	44.04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45.83	28.61	40.69	37.22	50.69	40.00	39.86	43.19
	b. 일산 서구	186	48.92	27.42	43.41	37.77	53.90	42.07	39.38	43.82
	c. 덕양구 남부	175	45.86	27.00	45.00	39.43	54.29	42.00	43.86	43.86
	d. 덕양구 북부	129	47.87	27.71	42.64	38.76	53.68	42.25	43.22	43.99
소득별	a. 소득없음	43	40.12	22.09	37.79	41.86	45.93	34.30	28.49	38.37
	b. 200만원 미만	142	47.01	25.35	44.01	37.50	50.88	42.61	43.31	44.72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49.52	26.69	43.96	37.08	52.42	45.17	42.87	45.65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48.88	30.39	43.19	38.62	55.08	42.48	42.58	43.80
	e. 500만원 이상	162	45.06	30.09	43.52	39.66	56.02	39.20	40.74	41.82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50.00	29.35	44.57	41.30	53.26	42.39	48.91	57.61
	b. 1만원 미만	46	46.74	28.26	42.39	37.50	53.26	40.22	43.48	47.28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48.76	28.57	44.53	39.43	54.23	43.59	42.64	44.83
문화다양성 참여 여부별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45.06	28.47	43.28	39.08	52.21	40.02	40.23	42.02
	e. 10만원 이상	150	48.17	25.83	40.67	34.83	53.17	42.50	40.00	40.83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44.81	26.30	41.23	36.69	51.30	39.94	41.2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없다	723	47.75	28.22	43.53	38.59	53.56	42.32	41.70	43.98
	있다	96	45.83	27.60	39.84	36.20	56.25	39.84	40.89	40.10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없다	704	47.69	28.09	43.79	38.71	52.95	42.40	41.76	44.25
	비인지	128	46.09	28.32	43.55	36.52	50.98	44.92	44.92	45.70
	인지	672	47.73	27.98	43.27	38.76	53.79	41.56	41.03	43.38

3) 소수자 인식 여부

- 응답자에게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각 구성 원에 대하여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성소수자’를 가장 크게 소수자로서 인식(61.44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56.97 점), ‘북한이탈주민’(56.8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문화다양성 교육 및 관련 활동 경험 여부와 문화 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민,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소수자로서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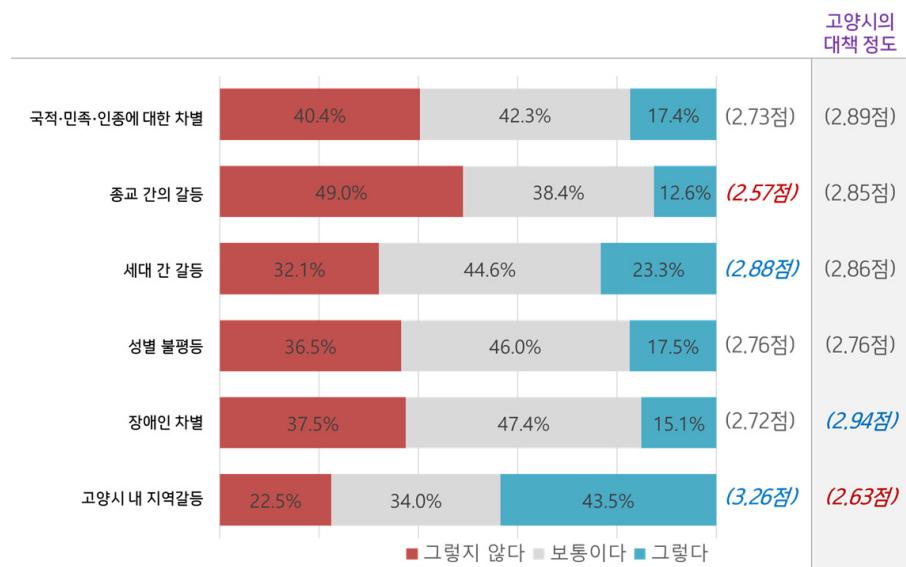
[표 4-17] 소수자 인식 여부(응답자 특성별)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n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전체		800	56.97	56.81	49.13	61.44	53.53	31.06	29.72	30.72	34.53
성별	a. 남자	367	56.54	56.95	47.21	61.72	53.07	31.61	29.90	26.63	32.70
	b. 여자	433	57.33	56.70	50.75	61.20	53.93	30.60	29.56	34.18	36.09
연령	a. 20대	174	55.89	57.04	43.25	57.61	56.90	32.04	27.30	30.46	33.76
	b. 30대	194	56.06	56.31	49.61	59.15	53.22	31.31	30.28	31.44	33.25
	c. 40대	232	56.14	56.36	48.71	63.36	53.88	30.82	30.50	29.96	35.24
	d. 50대	162	60.65	58.95	55.56	64.20	51.85	31.48	31.64	32.41	36.27
	e. 60대 이상	38	55.92	51.97	48.68	67.11	44.74	25.00	25.00	25.66	32.89
거주 여부	a. 거주자	670	56.53	56.83	48.69	61.16	53.17	30.52	29.10	29.89	34.07
	b. 근무자	130	59.23	56.73	51.35	62.88	55.38	33.85	32.88	35.00	36.92
지역	a. 일산 동구	180	54.44	55.42	45.97	60.69	53.33	30.56	29.58	29.44	33.47
	b. 일산 서구	186	58.33	58.74	50.13	60.62	54.30	31.99	30.38	31.99	34.54
	c. 덕양구 남부	175	55.57	55.14	49.14	61.71	51.86	30.57	28.00	29.29	33.86
	d. 덕양구 북부	129	58.14	58.33	49.81	61.82	53.10	28.29	28.10	28.29	34.50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51.62	51.30	48.05	54.55	49.03	27.60	24.03	27.60	30.52
	없다	723	57.54	57.40	49.24	62.17	54.01	31.43	30.33	31.05	34.9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55.21	54.17	47.92	56.77	49.48	28.39	25.26	27.08	32.03
	없다	704	57.21	57.17	49.29	62.07	54.08	31.43	30.33	31.21	34.87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52.93	54.10	42.58	58.98	52.15	29.69	28.13	29.10	32.62
	인지	672	57.74	57.33	50.37	61.90	53.79	31.32	30.02	31.03	34.90

4)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 및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한 인식

- 고양시 내의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고양시 내 개발지역과 미 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보통이다’ 34.0%, ‘그렇다(top2)’ 43.5%) 발현 정도에 대하여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26점). 이와 반면, 지역갈등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편’(2.63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지역갈등’ 현상 다음으로는 ‘세대 간 갈등’(2.88점), ‘성별 불평등’(2.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 및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각 현상에 대한 발현 정도에 대하여 주로 남자 응답자 보다는 여자 응답자가, 거주나 보다는 근무자(고양시 외 거주)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5$).
- 또한, 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정도에 대하여는 주로 연령별 집단과 문화다양성 교육 및 관련 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음($p<.05$).

[표 4-18] 고양시의 사회적 현상의 발현 정도에 대한 인식(응답자 특성별)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n	국가,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	종교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장애인 차별	지역 갈등
전체		800	43.31	39.25	47.03	43.88	42.88
성별	a. 남자	367	41.28	38.08	46.39	41.35	39.65
	b. 여자	433	45.03	40.24	47.58	46.02	45.61
연령	a. 20대	174	38.51	37.64	46.70	42.24	40.95
	b. 30대	194	42.78	38.02	45.75	42.01	41.88
	c. 40대	232	46.66	41.27	49.14	45.47	45.58
	d. 50대	162	44.29	39.81	46.14	44.75	42.90
	e. 60대 이상	38	43.42	38.16	46.05	47.37	40.13
거주	a. 거주자	670	42.65	38.51	46.60	43.02	42.05
여부	b. 근무자	130	46.73	43.08	49.23	48.27	47.12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42.21	42.86	44.48	39.94	42.53
	없다	723	43.43	38.87	47.30	44.29	42.9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44.01	42.19	47.40	45.31	42.19
	없다	704	43.22	38.85	46.98	43.68	42.97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39.65	37.89	43.75	41.99	41.41
	인지	672	44.01	39.51	47.66	44.23	43.15

[표 4-19]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 대책 충분성 인식(응답자 특성별)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n	국가,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	종교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장애인 차별	지역 갈등
전체		800	47.19	46.16	46.41	43.94	48.47
성별	a. 남자	367	47.96	48.43	47.00	45.71	50.00
	b. 여자	433	46.54	44.23	45.90	42.44	47.17
연령	a. 20대	174	46.98	43.39	43.97	41.67	49.28
	b. 30대	194	45.23	44.33	44.85	42.14	46.13
	c. 40대	232	49.25	47.74	47.63	45.47	48.92
	d. 50대	162	47.53	48.61	49.38	47.38	50.46
	e. 60대 이상	38	44.08	48.03	45.39	39.47	45.39
거주	a. 거주자	670	47.01	46.12	46.01	43.99	48.40
여부	b. 근무자	130	48.08	46.35	48.46	43.65	48.85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51.95	48.05	50.97	45.13	54.55
	없다	723	46.68	45.95	45.92	43.81	47.8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50.78	48.70	50.78	46.35	53.39
	없다	704	46.70	45.81	45.81	43.61	47.80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45.70	44.34	45.31	41.99	46.68
	인지	672	47.47	46.50	46.61	44.31	48.81

3. 문화예술적 참여와 표현

1) 문화예술활동 참여정도

- 고양시에 거주 및 근무하는 기간 동안 문화 및 예술활동 참여 정도를 물은 결과, 33.22점(100점 환산 점수 기준)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2.5%가 애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응답함.

[그림 4-12]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 집단과 문화다양성 교육 및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의 참여 정도가 가장 높고(37.21점), 50대가 가장 낮은(28.55점)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p=.023$).
 - 거주 지역별로는 덕양구 북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 및 예술활동 참여 정도가 가장 낮은 것(29.2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것(23.0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0$).
 - 그 외 다른 응답자 특성별 집단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4-20] 문화예술활동 참여정도(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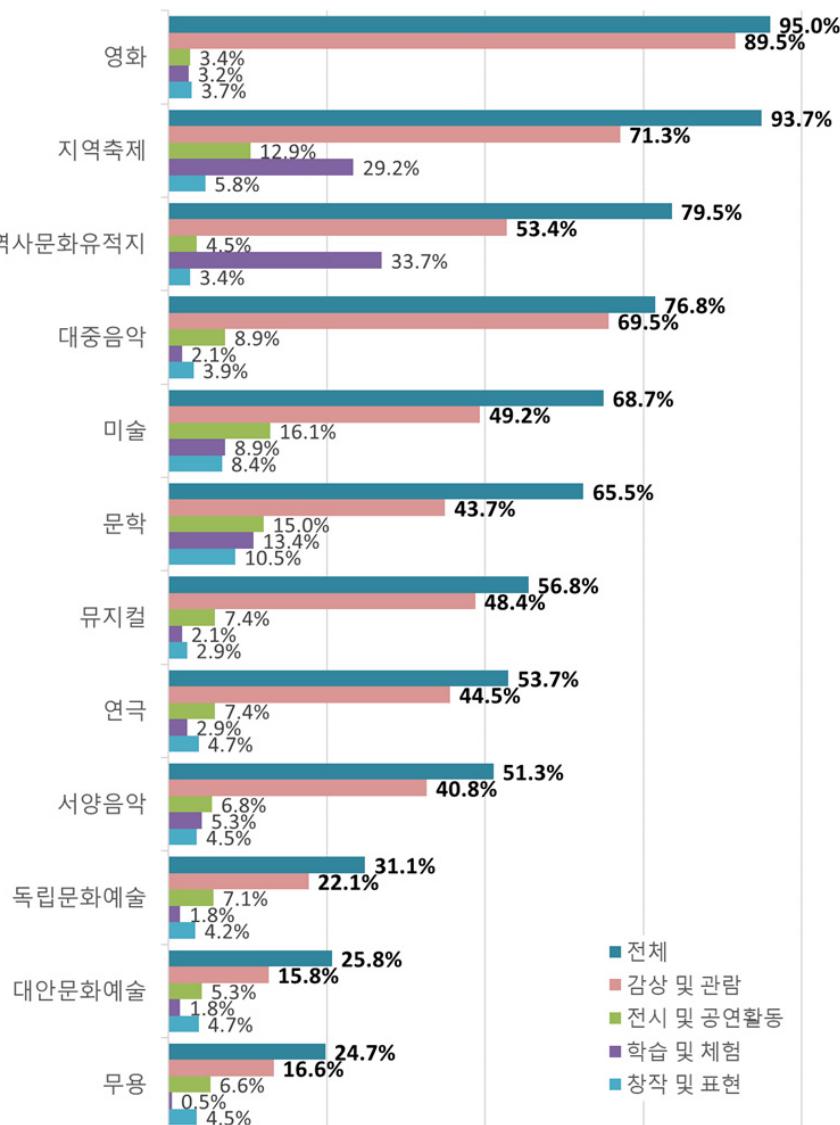
		<i>n</i>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i>M</i>	<i>p</i>	post-hoc
	전체	800	52.2	35.1	12.4	33.22	-	-
성별	a. 남자	367	54.5	33.8	11.7	32.08	.248	-
	b. 여자	433	50.8	36.3	12.9	34.18		
연령	a. 20대	174	51.7	31.0	17.2	37.21		
	b. 30대	194	51.0	34.0	14.9	35.05		
거주 여부	c. 40대	232	50.9	39.2	9.9	31.90	.023*	a>d
	d. 50대	162	57.4	33.3	9.3	28.55		
	e. 60대 이상	38	52.6	42.1	5.3	33.55		
지역	a. 거주자	670	51.0	36.4	12.5	33.88	.097	-
	b. 근무자	130	60.0	28.5	11.5	29.81		
소득별	a. 일산 동구	180	45.6	41.1	13.3	37.08		
	b. 일산 서구	186	53.8	33.3	12.9	33.06	.073	-
	c. 덕양구 남부	175	48.6	40.0	11.4	34.86		
	d. 덕양구 북부	129	58.1	29.5	12.4	29.26		
월 평균 예술비 지출액	a. 소득없음	43	51.2	41.9	7.0	33.14		
	b. 200만원 미만	142	53.5	31.0	15.5	33.80		
	c. 200만원~300만원 미만	207	55.6	32.4	12.1	32.73	.789	-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51.2	35.8	13.0	33.64		
	e. 500만원 이상	162	50.0	39.5	10.5	32.72		
문화예술 경험 여부별	a. 지출하지 않음	23	82.6	17.4	0.0	11.96		
	b. 1만원 미만	46	78.3	15.2	6.5	19.02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58.9	32.9	8.2	30.10	.414	-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42.9	40.3	16.8	38.76		
	e. 10만원 이상	150	40.7	40.7	18.7	39.17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28.6	42.9	28.6	48.05	.000*	-
	없다	723	55.0	34.3	10.7	31.6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28.1	41.7	30.2	48.44	.000*	-
	없다	704	55.8	34.2	9.9	31.14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67.2	26.6	6.3	23.05	.000*	-
	인지	672	49.7	36.8	13.5	35.16		

* $p < .05$

2) 참여 중인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방식

- 앞의 설문문항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에 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380명의 응답자들에게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주로 영화감상(89.5%), 지역축제감상(방문)(71.3%), 대중음악감상(69.5%), 미술

[그림 4-13] 참여 중인 문화예술활동과 참여방식(n=380)



감상(49.2%), 뮤지컬관람(48.4%), 연극관람(44.5%), 서양음악감상(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감상 및 관람’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시 및 공연활동’이나 ‘학습 및 체험’, ‘창작 및 표현’ 활동의 방식으로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남.

3)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걸림돌

- ‘고양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즐기는 데에 걸림돌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1, 2, 3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관련정보가 부족하다’(68.8%), ‘관심은 있으나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55.4%),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5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4]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걸림돌(중복응답) (1+2+3순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7b)에서 문화예술활동 향유의 걸림돌 1순위가 ‘비용문제’로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양시민과 근무자의 응답에서는 ‘비용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임.

4)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로 거주지역과 문화다양성 관련 경험 및 개념인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1]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응답자 특성별)

	n	고양시에서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문화예술활동이 제공된다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고양시에는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다	
전체	800	54.34	57.59	54.25	50.97	53.78	
연령	a. 20대	174	56.32	61.21	58.48	54.02	56.75
	b. 30대	194	55.67	58.51	54.64	49.36	53.87
	c. 40대	232	51.51	55.50	50.97	49.03	51.83
	d. 50대	162	54.94	57.41	54.17	52.47	53.86
	e. 60대 이상	38	53.29	50.00	53.29	50.66	51.32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57.22	57.92	54.03	51.53	54.03
	b. 일산 서구	186	57.39	59.27	56.05	52.02	56.32
문화 예술비 지출액	c. 덕양구 남부	175	56.57	58.29	55.71	53.00	54.14
	d. 덕양구 북부	129	45.74	52.33	49.81	48.45	50.78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39.13	46.74	39.13	38.04	42.39
	b. 1만원 미만	46	46.74	54.35	53.80	49.46	53.26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55.47	58.02	54.45	51.09	53.94
문화다양성 경험 여부별	d. 5만원 이상~10만원	238	54.73	57.88	53.89	50.74	52.84
	e. 10만원 이상	150	55.83	58.83	56.83	53.50	56.83
	있다	77	59.74	63.96	62.34	57.79	59.09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없다	723	53.77	56.92	53.39	50.24	53.22
	있다	96	58.85	63.28	61.20	57.03	57.29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없다	704	53.73	56.82	53.30	50.14	53.30
	비인지	128	51.37	53.71	49.41	46.88	48.44
	인지	672	54.91	58.33	55.17	51.75	5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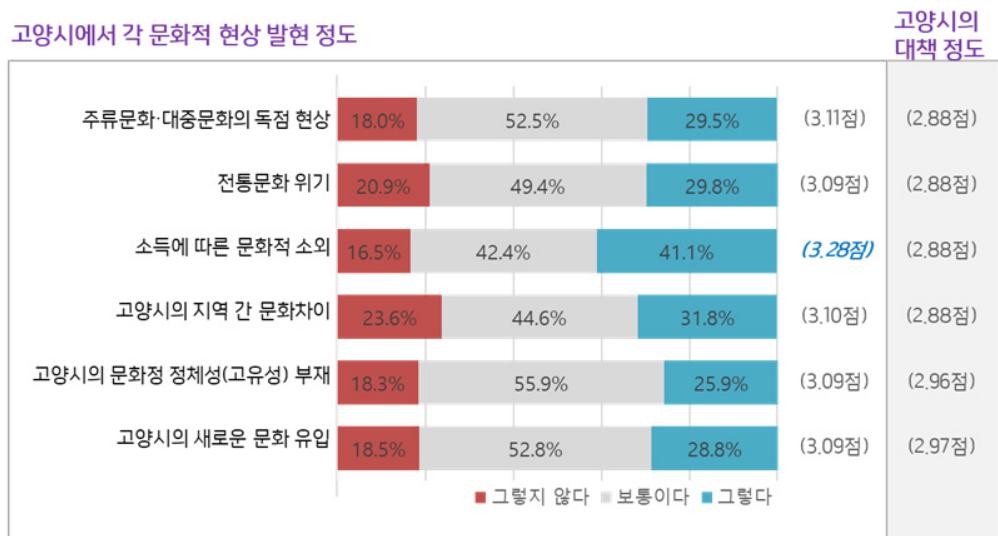
- 거주 지역 덕양구 북부권의 시민들의 경우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못한 응답자들보다 고양시의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5)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 및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한 인식

- 고양시에서 각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가 3.28점(5점 환산 평균 점수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주류문화·대중문화의 독점현상’(3.11점),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차이’(3.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5]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 및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에 대한 인식



- 고양시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문항별로 연령, 거주 지역,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경험 유무,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남($p<.05$).
 -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에 대해서 20대는 가장 낮게 인식을, 50

대는 가장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20대 시민들이 다른 연령대의 시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덕양구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표 4-22]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에 대한 인식(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주류문화, 대중문화의 독점현상	전통문화 위기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차이	고양시의 문화적 정체성 부재	고양시의 새로운 문화 유입
	전체	800	52.69	52.31	56.94	52.53	52.16	52.34
성별	a. 남자	367	51.70	50.75	56.20	51.16	51.29	50.61
	b. 여자	433	53.52	53.64	57.56	53.70	52.89	53.81
연령	a. 20대	174	54.31	52.30	52.30	48.71	49.71	51.01
	b. 30대	194	51.29	50.90	56.96	54.12	52.06	51.68
	c. 40대	232	52.59	52.37	58.19	53.23	53.88	52.80
	d. 50대	162	53.70	53.86	60.49	54.78	52.78	53.40
	e. 60대 이상	38	48.68	52.63	55.26	48.03	50.66	54.61
거주 여부	a. 거주자	670	52.61	52.50	56.42	52.24	52.24	52.20
	b. 근무자	130	53.08	51.35	59.62	54.04	51.73	53.08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51.11	51.94	56.39	51.11	52.64	49.44
	b. 일산 서구	186	53.90	52.55	56.32	51.34	51.61	50.40
	c. 덕양구 남부	175	53.00	53.29	55.71	49.14	52.43	55.14
	d. 덕양구 북부	129	52.33	52.13	57.56	59.30	52.33	54.65
문화다양성 참여 여부별	있다	77	51.62	46.75	52.27	52.60	48.05	52.27
	없다	723	52.80	52.90	57.43	52.52	52.59	52.35
문화다양성 경험 여부별	있다	96	55.73	52.34	55.99	52.86	51.82	55.47
	없다	704	52.27	52.31	57.07	52.49	52.20	51.92
문화다양성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49.02	49.80	52.34	50.00	50.78	48.63
	인지	672	53.39	52.79	57.81	53.01	52.42	53.05

-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 대책 충분성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p<.05$).

[표 4-23]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 대체 충분성 인식(응답자 특성별)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n	주류문화, 대중문화의 독점현상	전통문화 위기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차이	고양시의 문화적 정체성 부재	고양시의 새로운 문화 유입
전체		800	46.97	47.03	47.06	46.88	48.88	49.13
성별	a. 남자	367	46.25	47.00	47.00	46.93	48.09	48.09
	b. 여자	433	47.58	47.06	47.11	46.82	49.54	50.00
연령	a. 20대	174	46.12	46.84	46.26	44.11	50.29	50.57
	b. 30대	194	46.78	46.91	45.49	46.01	47.04	47.29
	c. 40대	232	46.98	45.15	46.12	48.06	48.17	47.52
	d. 50대	162	48.46	49.38	50.00	49.69	50.62	51.70
	e. 60대 이상	38	45.39	50.00	51.97	44.74	48.68	50.66
거주	a. 거주자	670	47.13	46.83	46.46	46.64	49.18	48.88
여부	b. 근무자	130	46.15	48.08	50.19	48.08	47.31	50.38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47.92	47.50	46.53	46.53	50.00	48.33
	b. 일산 서구	186	46.77	46.37	46.10	44.89	49.06	48.25
	c. 덕양구 남부	175	49.00	49.00	48.71	47.29	49.86	51.29
	d. 덕양구 북부	129	43.99	43.60	43.80	48.45	47.29	47.29
소득별	a. 소득없음	43	49.42	50.58	48.84	45.35	53.49	51.16
	b. 200만원 미만	142	48.06	46.30	46.30	48.06	48.06	50.35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45.89	47.83	46.01	44.81	48.67	50.24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45.83	45.83	47.05	46.95	48.58	47.36
	e. 500만원 이상	162	48.46	47.53	48.61	48.77	49.07	48.77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38.04	39.13	40.22	38.04	41.30	39.13
	b. 1만원 미만	46	44.57	45.65	45.65	44.57	46.74	47.28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47.23	46.28	45.99	45.55	48.32	49.71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48.11	47.79	47.48	48.53	49.37	49.05
	e. 10만원 이상	150	46.67	49.17	50.33	49.33	51.17	50.0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77	51.30	51.30	50.65	50.97	55.52	54.22
	없다	723	46.51	46.58	46.68	46.44	48.17	48.58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있다	96	51.82	50.78	51.82	52.86	53.13	53.91
	없다	704	46.31	46.52	46.41	46.06	48.30	48.47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43.95	45.31	45.31	46.88	46.88	45.70
	인지	672	47.54	47.36	47.40	46.88	49.26	49.78

4.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성별 불평등 현상

- 성별 불평등에 대하여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은 상관없다’에 대한 의견은 71.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남성상과 여성상에는 차별이 없다’에 대한 의견은 68.78점으로 가장 낮게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의견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p < .05$).

[그림 4-16] 성별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표 4-24] 성별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은 상관없다.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의 성별은 상관없다.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남성상과 여성상에는 차별이 없다.	사회는 여성입장을 지금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800	71.41	68.78	45.81	56.31
성별	a. 남자	367	72.14	70.78	51.77
	b. 여자	433	70.79	67.09	40.76
연령	a. 20대	174	74.86	70.98	39.80
	b. 30대	194	71.26	68.94	43.94
	c. 40대	232	68.97	66.92	46.44
	d. 50대	162	70.68	68.21	50.77
	e. 60대 이상	38	74.34	71.71	57.89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75.00	74.03	48.70
	없다	723	71.02	68.22	45.5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72.66	71.35	43.49
	없다	704	71.24	68.43	46.13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71.48	70.51	50.00
	인지	672	71.39	68.45	45.01

□ 세대 간 갈등

- 세대 간 갈등은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 수용도(70.8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한 업무를 해도 문제없다’에 대한 의견이 59.91점으로 수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17]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거주여부, 거주 지역,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아래 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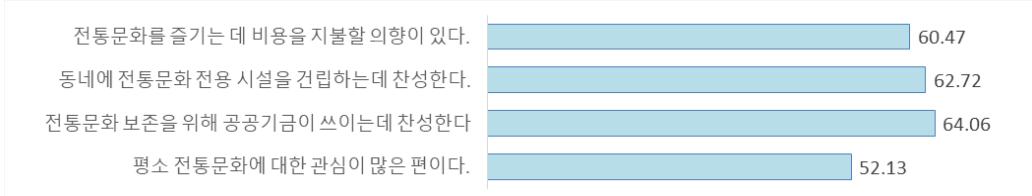
[표 4-25]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해도 문제없다.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해도 문제없다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다.
전체	800	59.91	64.06	70.88	61.16
성별	a. 남자	367	63.56	66.42	71.73
	b. 여자	433	56.81	62.07	70.15
소득별	a. 소득없음	43	63.37	70.35	80.23
	b. 200만원 미만	142	57.22	62.50	71.48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57.61	62.44	70.53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62.09	64.53	70.02
	e. 500만원 이상	162	60.96	65.12	69.60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64.94	66.88	71.10
	없다	723	59.37	63.76	70.85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63.54	68.75	72.92
	없다	704	59.41	63.42	70.60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57.81	61.13	68.36
	인지	672	60.31	64.62	71.35

□ 전통문화 위기 현상

-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하여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4.06점으로 가장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52.13점으로 가장 수용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4-18]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연령, 고양시 거주여부, 거주 지역,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p<.05$).
 - 연령별로는 20대의 시민들이 전통문화 발전 및 보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여부별로는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근무자보다 고양시민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성별, 소득별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표 4-26]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전통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동네에 전통문화 전용 시설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전체	800	60.47	62.72	64.06	52.13
성별	a. 남자	367	59.60	62.26	63.28	52.11
	b. 여자	433	61.20	63.11	64.72	52.14
연령	a. 20대	174	57.90	58.76	62.36	46.84
	b. 30대	194	60.31	60.95	62.24	50.52
	c. 40대	232	61.21	64.22	63.79	53.13
	d. 50대	162	60.96	65.90	67.28	57.10
	e. 60대 이상	38	66.45	67.11	69.08	57.24
거주 여부	a. 거주자	670	59.85	61.94	63.58	51.83
	b. 근무자	130	63.65	66.73	66.54	53.65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59.86	60.69	63.61	51.53
	b. 일산 서구	186	57.80	62.23	62.63	50.40
	c. 덕양구 남부	175	59.43	61.00	62.29	50.29
	d. 덕양구 북부	129	63.37	64.53	66.67	56.40
소득별	a. 소득없음	43	57.56	59.30	63.37	48.26
	b. 200만원 미만	142	57.92	60.92	62.32	50.00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61.35	63.77	63.77	50.36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61.38	62.80	65.65	54.67
	e. 500만원 이상	162	60.96	63.73	63.73	53.40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45.65	48.91	48.91	32.61
	b. 1만원 미만	46	54.35	59.78	62.50	45.65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58.38	61.15	63.41	50.73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63.45	65.02	64.60	55.25
	e. 10만원 이상	150	64.67	65.67	67.50	55.33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65.58	67.53	68.51	57.47
	없다	723	59.92	62.21	63.59	51.5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65.10	68.75	70.05	59.64
	없다	704	59.84	61.90	63.25	51.10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55.08	57.23	57.03	44.92
	인지	672	61.50	63.76	65.40	53.50

□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

-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에 대하여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 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62.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문화예술에 대한 비용 지출’ 및 ‘독립문화예술을 위한 공공기금 지원’에 대한 의견은 각각 57.00점, 57.16점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9]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p<.05$).
 - 월 평균 문화예술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집단은 비주류 문화 및 독립문화 발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전통문화 위기 현상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다른 응답자 특성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나타나지 않음(아래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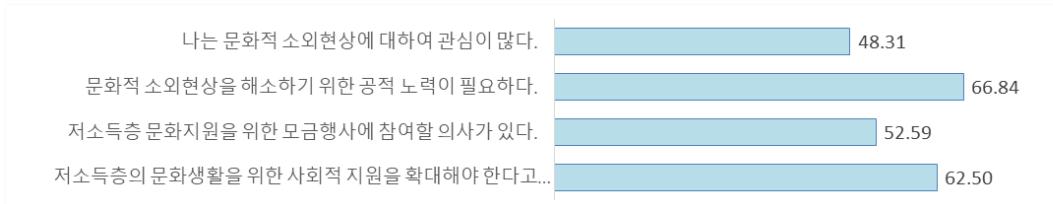
[표 4-27]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독립문화예술을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동네에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독립문화예술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 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
	전체	800	57.00	59.88	57.16	62.13
성별	a. 남자	367	56.20	59.67	56.20	61.44
	b. 여자	433	57.68	60.05	57.97	62.70
연령	a. 20대	174	59.91	59.48	54.89	61.78
	b. 30대	194	54.77	59.66	55.28	60.44
거주 여부	c. 40대	232	55.17	58.41	57.54	60.99
	d. 50대	162	58.64	61.27	60.65	65.59
	e. 60대 이상	38	59.21	65.79	59.87	64.47
거주 지역	a. 거주자	670	56.98	60.00	57.54	62.28
	b. 근무자	130	57.12	59.23	55.19	61.35
소득별	a. 일산 동구	180	58.06	60.00	57.08	62.36
	b. 일산 서구	186	55.65	58.87	55.91	60.35
	c. 덕양구 남부	175	55.86	58.71	57.57	61.86
	d. 덕양구 북부	129	58.91	63.37	60.47	65.50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소득없음	43	61.63	58.72	58.72	63.37
	b. 200만원 미만	142	54.93	59.86	58.63	62.85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58.33	60.63	56.28	62.80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55.59	60.37	57.42	61.89
	e. 500만원 이상	162	58.02	58.49	56.17	60.65
문화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32.61	41.30	43.48	51.09
	b. 1만원 미만	46	48.37	59.78	58.15	64.13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54.74	58.09	56.34	61.52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61.13	62.08	58.72	61.87
	e. 10만원 이상	150	62.00	63.33	58.33	65.00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64.94	66.88	62.01	69.16
	없다	723	56.15	59.13	56.64	61.3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64.06	67.19	63.80	69.79
	없다	704	56.04	58.88	56.25	61.08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53.32	53.52	49.41	56.25
	인지	672	57.70	61.09	58.63	63.24

□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현상

-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하여 ‘문화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66.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개인적 관심 정도’는 48.31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4-20]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연령, 고양시 거주여부, 거주 지역,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p<.05$).
 - 연령별로는 20대의 시민들이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60대의 시민들은 문화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거주여부별로는 고양시민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근무자보다 저소득층 문화지원에 대한 수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공적 지원,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성별, 소득별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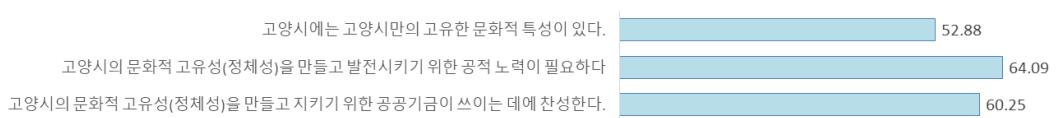
[표 4-28]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n	나는 문화적 소외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문화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문화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800	48.31	66.84	52.59	62.50
성별	a. 남자	367	48.50	65.74	52.11
	b. 여자	433	48.15	67.78	53.00
연령	a. 20대	174	45.40	67.53	51.72
	b. 30대	194	45.88	64.56	51.55
	c. 40대	232	48.92	65.84	53.34
	d. 50대	162	51.23	68.52	53.40
	e. 60대 이상	38	57.89	74.34	53.95
거주	a. 거주자	670	47.99	66.75	51.75
여부	b. 근무자	130	50.00	67.31	56.92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49.72	66.11	53.47
	b. 일산 서구	186	45.30	66.53	49.06
	c. 덕양구 남부	175	47.43	65.86	50.43
	d. 덕양구 북부	129	50.19	69.19	55.04
소득별	a. 소득없음	43	46.51	68.60	52.33
	b. 200만원 미만	142	50.88	70.07	52.29
	c. 200만원 ~300만원 미만	207	45.77	66.06	52.29
	d. 300만원~500만원 미만	246	50.51	66.06	52.34
	e. 500만원 이상	162	46.45	65.74	53.70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23	44.57	59.78	35.87
	b. 1만원 미만	46	41.85	66.30	48.91
문화 예술비 지출액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343	46.79	68.29	51.68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38	51.37	65.76	54.20
	e. 10만원 이상	150	49.50	66.50	55.83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77	58.44	69.48	60.06
	없다	723	47.23	66.56	51.8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56.77	69.53	59.90
	없다	704	47.16	66.48	51.60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43.95	62.70	47.46
	인지	672	49.14	67.63	53.57

□ 고양시 문화정체성 부재 현상

- 고양시 문화정체성 부재 현상에 대하여 ‘고양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고양시에는 고양시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의견은 52.8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4-21] 고양시 문화정체성 부재 현상에 대한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p<.05$).
- 그 외 성별, 거주 지역별, 소득별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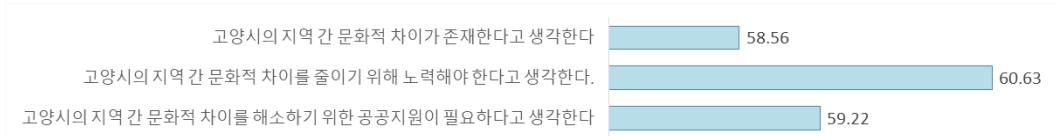
[표 4-29] 고양시 문화정체성 부재 현상에 대한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고양시에는 고양시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	고양시의 문화적 고유성(정체성)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양시의 문화적 고유성(정체성)을 만들고 지키기 위한 공공기금이 쓰이는 데에 찬성한다.	
전체	800	52.88	64.09	60.25	
연령	a. 20대	53.02	62.50	59.20	
	b. 30대	51.55	63.79	56.96	
	c. 40대	52.48	63.25	60.24	
	d. 50대	53.86	66.67	63.73	
	e. 60대 이상	57.24	67.11	67.11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66.56	71.10	65.58	
	없다	51.42	63.35	59.68	
문화다양성 경험 여부별	있다	60.16	71.88	68.49	
	없다	51.88	63.03	59.13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48.05	60.94	53.71	
	인지	53.79	64.69	61.50	

□ 고양시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

- 고양시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에 대하여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58.5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2] 고양시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거주 지역,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활동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p<.05$).
 - 특히, 일산 서구의 시민들은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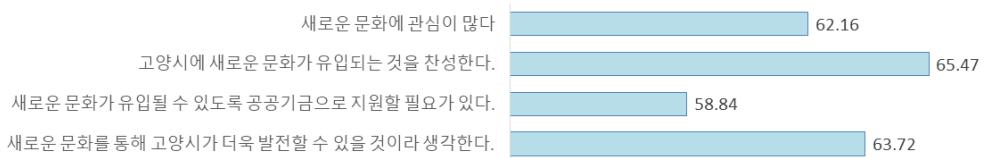
[표 4-30] 고양시 지역 간 문화 격차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n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800	58.56	60.63
연령	a. 20대	174	54.74	56.90
	b. 30대	194	60.57	60.18
	c. 40대	232	58.94	60.13
	d. 50대	162	59.41	64.20
	e. 60대 이상	38	59.87	67.76
거주 지역	a. 일산 동구	180	57.36	57.50
	b. 일산 서구	186	57.12	60.75
	c. 덕양구 남부	175	55.43	58.86
	d. 덕양구 북부	129	65.12	65.7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96	62.24	65.10
	없다	704	58.06	60.01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128	53.71	52.93
	인지	672	59.49	62.09

□ 고양시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

- 고양시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에 대하여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찬성한다’의 의견이 65.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문화 유입을 위한 공공 기금 지원’에 대한 의견이 58.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23]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연령, 거주 지역, 월 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p<.05$).

[표 4-31]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응답자 특성별)

	n	100점 환산 평균 점수(점)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다.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찬성한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화를 통해 고양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800	62.16	65.47	58.84	63.72	
연령	a. 20대	65.37	69.11	58.62	63.51	
	b. 30대	64.18	65.08	57.99	62.89	
	c. 40대	57.76	62.50	58.62	62.39	
	d. 50대	62.81	65.90	60.34	66.20	
	e. 60대 이상	61.18	67.11	59.21	66.45	
거주	a. 일산 동구	62.64	64.86	59.44	63.33	
	b. 일산 서구	60.89	64.38	57.12	62.63	
지역	c. 덕양구 남부	62.86	67.43	57.57	62.71	
	d. 덕양구 북부	61.63	65.70	64.15	66.28	
월 평균 문화 예술비 지출액	a. 지출하지 않음	51.09	57.61	46.74	52.17	
	b. 1만원 미만	54.35	64.13	56.52	60.87	
	c.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60.35	64.50	58.24	64.36	
	d.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65.34	67.44	59.98	63.24	
	e. 10만원 이상	65.33	66.17	61.00	65.67	
문화다양성 사업 및 교육 참여 여부별	있다	68.18	68.51	63.31	67.53	
	없다	61.51	65.15	58.37	63.3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여부별	있다	68.23	70.57	66.41	70.05	
	없다	61.33	64.77	57.81	62.86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 여부별	비인지	58.59	61.33	55.86	60.35	
	인지	62.83	66.26	59.41	64.36	

제5절 소결

1. 지원정책 분석결과

□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활성화 및 조례 제정 필요

- 고양시에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해 오고 있지만, 문화다양성의 의미가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은 없음.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필요함.

□ 소수성의 표현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지지 필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5, 2017b)에 의해 범주화된 소수자 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양시는 경제활동 및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들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정책이 다문화 정책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또한 소수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소수성을 위한 지원과 지지의 방향을 취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의 정책현황 분석 틀을 기준으로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양시에는 ‘지역문화발전’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었음.
- 크고 작은 지역의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기존의 행사성 사업 위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문화예술의 종 다양성 확보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2. 기반여건 분석 결과

□ 문화다양성 관련 고양시 부서 및 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관점 이해 필요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은 소수자 관련해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문화적 참여 및 표현과 관련해서는 문화 관련 기관에서 실현되고 있음.
- 하지만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일부 특정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요구되는 개념이므로 사회복지나 문화 관련 부서 이 외에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다양성 관련 고양시 부서 및 기관 간의 네트워킹 필요

- 분석 결과,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은 문화예술과 및 고양문화재단에서 주로 단위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다수 실시하고 있었음.
- 하지만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부서 및 기관에서의 정책들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현황자료 및 사업내용 등이 공유되는 일이 필요함. 이는 향후 각각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문화다양성이라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실천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

3. 시민인식 분석 결과

□ 문화다양성 가치의 중요성 인식 증진 필요

-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 문화다양성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 필요함(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다양성 행사 주간 실시 등).

□ '지역갈등' 및 '세대 간 갈등'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인지와 대응 중요

- 설문조사 결과, 고양시의 시민(거주자포함)들은 대체적으로 차별경험이 없으며,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임. 단, 연령이 높을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리감을 좀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양시에서 차별 및 다름의 문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지역갈등’과 ‘세대 간 갈등’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고양시의 인지와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시민들의 문화적 표현과 참여방식의 다양화 필요

- 고양시의 시민(거주자포함)들은 문화예술 참여 경험이 전국 단위 평균 보다 높은 편,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나 지역축제, 역사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람 및 감상활동임. 활동 내용 및 방식의 다양화 필요함.
- 그러나 연령별로는 50대와 거주 지역별로는 덕양구 북부 시민들의 참여 경험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표현 및 참여 경험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경험 활용

- 문화예술비용을 지출하는 응답자가 ‘전혀’ 지출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하여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일수록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용도 높음.
- 특히, 전통문화 위기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20대, 일산서구 및 동구 시민일수록 관심도 및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사업 수행 시 세대 또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람들이 사회적·문화적 현상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고양시 및 고양시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정책지원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제 5 장

고양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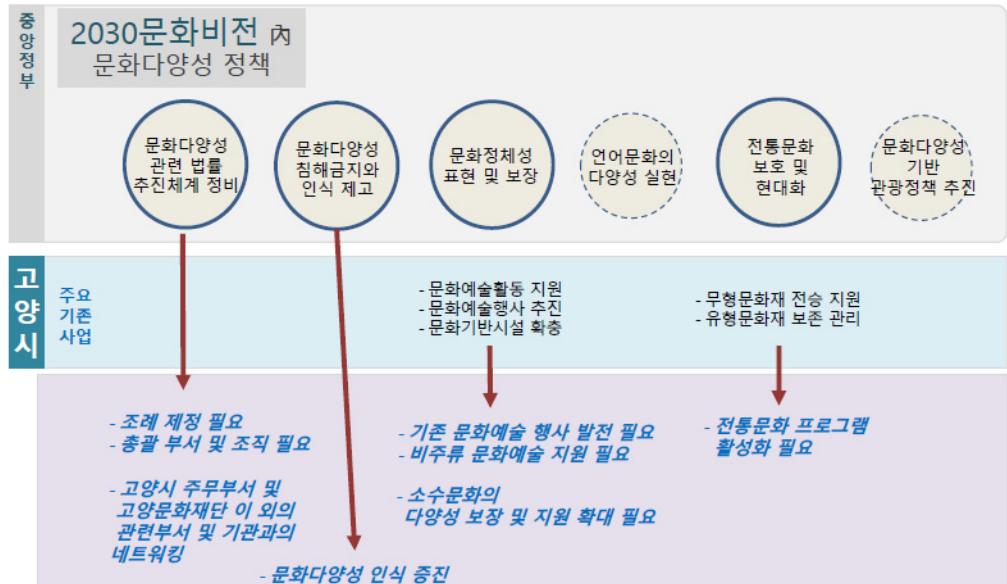
제3절 과제별 실천로드맵

제1절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란, 사회문화적 기준(국적, 민족, 지역, 성별, 세대, 성적취향, 문화적 취향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다름’을 의미함. ‘문화다양성이 보호 및 존중받는 사회’라고 표현될 수 있으려면, 그 사회에서는 ‘다름’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이 하나의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함.
- 이러한 의미를 고려한다면, 고양시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출발지점에 있음. 고양시의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지닌 사업들이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 의해 다수 실행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시민인식 분석 결과,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에 비하여 고양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어 인식 증진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하는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양시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현재 직접적인 사업 실행보다는 정책 추진을 위한 탐색(시민 인식 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상황임.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3대 가치 아래에 9개의 주요의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 중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이 네 번째 주요의제로 제시되어 있어, 국가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 ①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추진체계 정비, ② 문화다양성 침해금지와 인식 제고, ③ 문화정체성 표현 및 보장, ④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⑤ 전통문화 보호 및 현대화, ⑥ 문화다양성 기반 관광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고양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①, ②, ③, ⑤번을 중심으

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¹⁸⁾

[그림 5-1] '2030문화비전' 내 문화다양성 정책 내용과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 첫째,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근거와 조직구성이 필요함.
- 둘째, 고양시의 특정 시민이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에 대한 인식 증진의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고양시는 기준에 실행되어 왔던 문화예술활동 지원, 행사 추진, 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추진 이외에도 비주류 문화예술 활성화, 다양한 문화적 표현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넷째, 고양시는 유·무형 문화재의 보호 및 전승에 대한 지원을 넘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정책지원이 필요함.

18) 네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은 지역어의 보존과 특수언어의 진흥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고양시에는 특정 지역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요 방향성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고양시에는 관광 참여 과정에서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이 미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 영역에 중점을 두고, 여섯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문화다양성 기반 관광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주요 방향성에서 제외하였음.

- 이는 최종적으로 ‘포용의 시민문화 형성’, ‘차이와 다른의 공존으로 상생’,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향유’를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추진전략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그림 5-2]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체계

정책 목표	포용의 시민 문화 형성 / 차이와 다른의 공존으로 상생 /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향유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소수집단이 아닌 시민들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 ‘차별’이 아닌 ‘차이’와 ‘다름’을 인지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소수자가 아닌 소수성을 대상으로 		
추진 전략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주요 과제	①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② 문화다양성 이해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접촉면 강화	① 문화다양성 주제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② 매개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③ 공동체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①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② 전담기구 구성 ③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④ 문화다양성 추진 네트워크 지원

제2절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1. 추진전략 ① :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 주요과제① :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 문화다양성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다양성을 생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을 하고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음. 의도적인 교육적 경험을 통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음. 특히, 초기단계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추진은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다양성 교육 역시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학교]

-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은 유관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성과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면, 학습성과에 대한 부담이 낮은 유치원, 초등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매칭 및 지원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국가 공모사업 활용 등의 방안이 가능함.

[지역사회]

- 다양한 공모를 통한 시단위, 구단위, 동단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특히, 고양시의 청소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참여도가 낮게 났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구현되어 교육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 사업 수행기관이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교육참여자를 모집하고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일임.

-즉, 지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활성화 및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참여자들을 만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데, 이는 교육자 개인이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단이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행정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문화다양성 정책담당자 대부분이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임.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의 문화다양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함.

□ 주요과제② : 문화다양성 이해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접촉면 강화

- 앞서 제시한 의도적인 교육적 경험 이외에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아래와 같은 정책방안이 가능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캠페인 강화 : 지역 내 공공시설 문화다양성 캠페인 강화(예: 세종시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공공예술 프로젝트 ‘多화만사성버스’)
 - 문화다양성 대상 범주 작가 및 이를 모티브로 한 예술가의 작품 전시 및 공연, 축제 개최 지원
 - 고양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이를 위해 새롭게 문화다양성 축제 기획하거나 기존의 축제를 매개하거나 결합하여 운영 가능함.

2. 추진전략 ② :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 주요과제③ :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시민들에게 직접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 가능함.
- 고양시민의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 세대 간 교류 문화예술프로그램 : 실태조사결과, 지역갈등 다음으로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하여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연습 위주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이 외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함.
 - 장년층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 실태조사결과, 장년층이 노년층의 응답자들에 비해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통문화/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실태조사결과, 근무자보다 거주자(고양시민)이, 일산동구 및 서구시민들이, 문화다양성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편임.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시설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하지만, 문화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공간’ 중심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공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여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협업공간, 공유공간 등에 대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함.

□ 주요과제④ : '평가' 아닌 '컨설팅' 관점에서의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함. 기존에 활동해온 예술가, 문화기획자, 활동가들이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론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기존의 예능강좌 교육이나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자들이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매개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에 ‘문화예술적 관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집체 교육의 형식이 아닌 매개자 간의 소통/참여/표현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 집담회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과제⑤ : 공동체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은 지역 현장에의 밀착성에 있음. 특히, 문화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문화적 집단 또는 공동체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므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정책은 개인으로서의 시민이나 매개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방안이 필요함.
- 예컨대, 소단위의 마을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공동체에 활동을 지원하며 그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증진시키거나,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공동체 간 문화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단위 마을 혹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 및 공동체 간의 관계,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3. 추진전략 ③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주요과제⑥ :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 문화다양성 조례제정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적 기반임. 현재 12개의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함.
 - 시장 및 도지사의 책무규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문화다양성위원회 및 센터 설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실태조사 실시, 지역협력체 운영,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과 지원, 기여한 기관의 포상 등
-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고양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출발단계에 있으므로 직접적인 정책사업 실시보다도 조례 제정과 같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주요과제⑦ : 전담기구 구성(문화다양성정책 추진위원회)

-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제시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함. 또한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조정함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고양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원회 구성 및 지역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이 가능함.

□ 주요과제⑧ :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정책은 주로 정부사업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음.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대내외 환경적 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지표항목은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수임.

- 특히,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사업’이 아닌 가치로서 고양시 주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다양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고양시의 전 부처에서, 규모가 큰 사업 실행 시 문화다양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검토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함.

□ 주요과제⑨ : 문화다양성 추진 네트워크 지원

- 문화다양성 사업은 공공부문 보다 시민단체의 역할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함께 중요함. 시민사회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중요함.
-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실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 관련 시설, 협의체 구성 유무, 학교, 유관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 조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함.

제3절 과제별 실천로드맵

- 고양시에서의 문화다양성 논의 및 정책 추진에 대한 고민의 첫 발이 시작된 만큼,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함.

[표 5-1]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과제 실천로드맵(안)

추진전략	정책과제		
	단기	중기	장기
1.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강화		
	문화다양성 이해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접촉면 강화		
2.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고양시민 대상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3.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지역문화공동체 실태조사	공동체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고양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추진		
		전담기구 구성(기칭: 문화다양성정책추진위원회)	
	고양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양시 문화다양성 추진 네트워크 지원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휘원(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김면(2019). “문화다양성 시대, 지금까지와 앞으로”, 『공공정책』, 161: 53–57.
- 김면·정보람·한건수·김준호(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17-05.
- 김면(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위원국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18-08.
- 김정수(2017),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 문정화·유선자(2018). 『고양시 인구 변화 분석』, 고양시정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b).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민희(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서적 상태, 소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정보화정책』, 25(2): 6 7–83.
- 박소현(2018).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범위·과제: 문화다양성 협약으로부터”, 『새문화정책준비단 현장토론회 준비자료집 (초안)』, 새문화정책준비단.
- 박신영·여용숙(2019). “문화적 다양성 태도, 문화적 공감이 시민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31(1): 183–195.
- 박윤경·류상희·이은주(2015).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태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3): 24–43.
- 서울연구원(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향 연구”, 『연구결과 공유회의 자료집』.
- 세계경제포럼(201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 오주희·김자열·이창석·김남오(2016).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
- 이지훈(2005).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우려”, 『열린전북』, 68: 166–169.
- 이태규(2006).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한국경제연구원.
- 이혜진·백정원·임영호(2016).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디아스포라연구』, 10(1): 181–224.
- 장세길(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3–15.
- 전영평 외(2011).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 채경진·이상민·임학순(2013). “문화다양성 정책의 평가모형 개발과 쟁점”, 『지방정부연구』, 17(2): 189–210.
- 최영화·김창수·민경선(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건수(2015).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 이해교육연구』, 10(2): 163–19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a).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b).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a).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b).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 조사분석』, 여성가족부.
- 한국예술종합학교(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승준(2009).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269-291.

[해외문헌]

Stenou, K.(2007). 『UNESCO and the Issue of Cultural Diversity: Review and Strategy, 1946-2007』, Unesco.

[기타자료]

- 고양시(2019). “문화재”, 『경기도고양시기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620&tblId=DT_1M00018&conn_path=I3 (접속일 2019.4.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접속일: 2019.3.27.~2019.4.4.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접속일: 2019.3.27.~2019.4.4.
- 국세청(2019).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현황”, 『국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N_1236A&conn_path=I3 (접속일 2019.3.27.)
- 보건복지부(2019). “시군구별, 장애등급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장애인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6&conn_path=I3 (접속일 2019.4.2.)
- 부산문화재단 http://www.bscf.or.kr/05/01.php?page=8&id=notice&mode=view&b_idx=2130 접속일 2019.03.27.
- 유네스코 <http://portal.unesco.org/en>. 접속일: 2019.3.27.
- 통계청(2017).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conn_path=I3 (접속일 2019.4.4.)
- 통계청(2019).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시군구”,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5&conn_path=I3 (접속일 2019.4.4.)
- 통계청(2019). “등록외국인 현황(시도/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261&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접속일 2019.03.27.)
- 통계청(2019). “시군/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지역별고용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2S&conn_path=I3 (접속일 2019.4.3.)
- 통계청(2019). “시도/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접속일 2019.3.27.)
- 통계청(2019).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conn_path=I3 (접속일 2019.4.3.)
- 통계청(2019)..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vw_cd=MT_ZTITLE&list_id=A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접속일 2019.4.4.)
- 통일부(2019).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접속일 201

9.3.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arko.or.kr/m1_03/m2_04/m3_01.do?&mode=view&page=5&cid=477875 접속일: 2019.10.3

행정안전부(2019).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1_A&conn_path=13 (접속일 2019.4.2.)

[법조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고양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고양시 별별장애인 지원 조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보도자료]

“문화부 '2015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아이뉴스24(2015.05.20.) <http://inews24.com/view/899059> (접속일 2019.3.27.)

“문화부, 21일부터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노컷뉴스(2016.05.19.) <https://www.nocutnews.co.kr/news/4595398> (접속일 2019.3.27.)

“문화다양성주간, 21일부터 7일간...전시·체험·공연·포럼 등” 뉴스핌(2018.05.1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_17000148 (접속일 2019.3.27.)

“차이를 즐기자, '2018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2018.05.17.)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700

부록

고양시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부록

2019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고양시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고양시 거주자 및 근무자)

2019년 5월

연구기관 | 고양시정연구원
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문화재단의 의뢰로
고양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다수자는 누구이며, 소수자는 누구일까요?

**‘소수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유형의 ‘소수자’인 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인사말
및
조사취지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법률로 제정(2014년)되어 많은 정책적 실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제12691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다양성법’)

제1조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의 현 상태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 설문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각자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조사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의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다양성이란? (*Cultural Diversity*)

사회문화적 기준(국적, 민족, 지역, 성별, 세대, 성적취향, 문화적 취향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 또는 ‘다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표현될 때에는

- ① 사회 내에서 ‘다름’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것과
- ②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가치들이 존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다양성법’ 제2조(정의)

- 1항.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2항.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①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알지 못한다.
- ②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르겠다.
- ③ 들어본 적 있으며, 그 의미를 약간 알고 있다.
- ④ 들어본 적 있으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i>*문화다양성의 가치란? :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i>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우리지역(고양시) 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4-1. 고양시는 문화다양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고양시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i>*소수자란?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신체적으로 구별되어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사람들</i>	①	②	③	④	⑤
4-3. 고양시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4. 고양시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고양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i>*문화다양성의 가치란? :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i>	①	②	③	④	⑤

II. '차이'을 존중하고 '다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양시

5. 귀하께서는 고양시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는 동안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전혀 없다 | (6번 문항으로 이동) |
| ② 거의 없는 편이다 | (5-1번 문항으로 이동) |
| ③ 보통이다 | (5-1번 문항으로 이동) |
| ④ 약간 많은 편이다 | (5-1번 문항으로 이동) |
| ⑤ 매우 많다 | (5-1번 문항으로 이동) |

5-1. 귀하께서 받은 차별의 원인은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 | | |
|-------------|-------------------------|
| ① 국적의 차이 | ⑥ 신체적 건강(장애)의 차이 |
| ② 지역출신의 차이 | ⑦ 종교의 차이 |
| ③ 연령/세대의 차이 | ⑧ 소득수준의 차이 |
| ④ 성별의 차이 | ⑨ 기타 () |
| ⑤ 성적취향의 차이 | |

5-2. 귀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자유롭게 응답)

6.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구분	전혀 느끼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거리감을 느낀다
6-1. 나와 다른 국적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6-2. 나와 다른 지역출신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6-3. 나와 다른 연령/세대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6-4.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6-5. 나와 다른 성적취향을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⑤
6-6. 나와 다른 신체적 건강(장애)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6-7.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⑤
6-8. 나와 다른 소득수준의 사람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유형의 소수자입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의 구성원들이 고양시의 소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자란?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신체적으로 구별되어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7-1. 외국인근로자	①	②	③	④	⑤
7-2.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⑤
7-3. 결혼 이주민	①	②	③	④	⑤
7-4.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⑤
7-5.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7-6. 아동	①	②	③	④	⑤
7-7.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7-8. 여성	①	②	③	④	⑤
7-9. 노인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위의 보기에서 제시된 구성원들 외에 고양시의 소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있을 시, 자유롭게 응답)

9.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회적 현상들이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나타난다
9-1. 국적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9-2. 종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3. 세대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9-4. 성별 불평등 (젠더문제)	①	②	③	④	⑤
9-5. 장애인 차별	①	②	③	④	⑤
9-6.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0-1. 국적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10-2. 종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3. 세대 간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4. 성별 불평등 (젠더문제)	①	②	③	④	⑤
10-5. 장애인 차별	①	②	③	④	⑤
10-6.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①	②	③	④	⑤

III. 다양한 문화예술적 참여와 표현이 가능한 고양시

11. 귀하께서는 고양시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는 동안 문화 및 예술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 (12번 문항으로 이동) |
| ② 다소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 (12번 문항으로 이동) |
| ③ 보통이다 | (11-1번 문항으로 이동) |
| ④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 (11-1번 문항으로 이동) |
| 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11-1번 문항으로 이동) |

11-1. 귀하께서 고양시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

- * 학습 및 체험 : 해당 문화예술을 경험하거나 배우기 위하여 일정기간 및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 * 창작 및 표현 : 해당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나의 생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 전시 및 공연활동 : 해당 문화예술을 작품의 형태로 특정 공간과 시간에 공개하여 외부에 보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 감상 및 관람 : 해당 문화예술을 '보는' 방식으로 즐기며 내재된 가치를 음미하는 활동

활동내용	활동방식		학습 및 체험	창작 및 표현	전시 및 공연활동	감상 및 관람
	해당 없음	①				
a. 문학	①	②	③	④	⑤	
b.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①	②	③	④	⑤	
c. 서양음악(클래식, 오페라, 서양악기 관련)	①	②	③	④	⑤	
d. 연극	①	②	③	④	⑤	
e. 뮤지컬	①	②	③	④	⑤	
f.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①	②	③	④	⑤	
g. 영화	①	②	③	④	⑤	
h. 대중음악	①	②	③	④	⑤	
i. 지역축제	①	②	③	④	⑤	
j. 역사문화유적지	①	②	③	④	⑤	
k. 독립문화예술*	①	②	③	④	⑤	
* 독립문화예술이란? 기존의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제작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분야 (인디음악, 독립영화 등)						
l. 대안문화예술*	①	②	③	④	⑤	
* 대안문화예술 :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혼합 및 융합된 탈장르적 실험적 문화예술분야 (다원예술, 커뮤니티아트 등)						
m. 기타()	①	②	③	④	⑤	

12. 고양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즐기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관심이 없다
- ② 관심은 있으나,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
- ③ 비용이 많이 듦다
- ④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 ⑤ 교통이 불편하다
- ⑥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 ⑦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 ⑧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 ⑨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 ⑩ 기타 (_____)

13. 다음은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3-1. 고양시에서 자유로운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2.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문화예술활동이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13-3.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4. 고양시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5. 고양시에는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화적 현상이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나타난다
14-1. 주류문화·대중문화의 독점 현상 * 주류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 대중문화란? 다수의 취향에 맞춰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확산되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는 문화	①	②	③	④	⑤
14-2. 전통문화 위기	①	②	③	④	⑤
14-3.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①	②	③	④	⑤
14-4.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차이	①	②	③	④	⑤
14-5. 고양시의 문화정 정체성(고유성) [*] 부재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란? 전통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20년 사이동안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특징 고유한 특징을 함께 의미함.	①	②	③	④	⑤
14-6. 고양시의 새로운 문화 유입 * 고양시는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과 교통망 확대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거나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①	②	③	④	⑤
14-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화적 현상에 대하여 고양시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5-1. 주류 문화예술 독점 현상	①	②	③	④	⑤
15-2. 전통문화 위기	①	②	③	④	⑤
15-3. 소득에 따른 문화적 소외	①	②	③	④	⑤
15-4.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차이	①	②	③	④	⑤
15-5. 고양시의 문화정 정체성(고유성) 부재	①	②	③	④	⑤
15-6. 고양시의 새로운 문화 유입	①	②	③	④	⑤
15-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IV.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개인의 수용도

16. 다음은 각 사회적 · 문화적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6-1.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은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16-2.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의 성별은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16-3.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남성상과 여성상에는 차별이 없다	①	②	③	④
16-4. 사회는 여성입장을 지금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16-5.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해도 문제없다.	①	②	③	④
16-6.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해도 문제없다	①	②	③	④
16-7.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16-8.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16-9. 독립문화예술을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6-10. 동네에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16-11. 독립문화예술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16-12.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 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16-13. 전통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6-14. 동네에 전통문화 전용 시설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16-15.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16-16.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16-17. 나는 문화적 소외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6-18. 문화적 소외현상은 '소득'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16-19. 문화적 소외현상은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16-20. 문화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6-21. 저소득층 문화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16-22.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23. 고양시에는 고양시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16-24. 고양시의 문화적 고유성(정체성)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 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6-25. 고양시의 문화적 고유성(정체성)을 만들고 지키기 위한 공공기금이 쓰이는 데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6.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7.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8. 고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9.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30.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31. 고양시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더라도, 기존의 문화를 보호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32. 새로운 문화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33. 새로운 문화를 통해 고양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통계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B.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C.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D.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재혼 ④ 기타()				
E.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⑥ 없음				
F. 현재 거주지역	<table border="0"> <tr> <td>① 고양시 거주민</td> <td>() 시/도 () 시/군/구 _____동</td> </tr> <tr> <td>② 고양시 외 거주민</td> <td>거주지역명 : ()시/도 ()시 고양시 근무지역 : () 시/군/구 _____동</td> </tr> </table>	① 고양시 거주민	() 시/도 () 시/군/구 _____동	② 고양시 외 거주민	거주지역명 : ()시/도 ()시 고양시 근무지역 : () 시/군/구 _____동
① 고양시 거주민	() 시/도 () 시/군/구 _____동				
② 고양시 외 거주민	거주지역명 : ()시/도 ()시 고양시 근무지역 : () 시/군/구 _____동				
G. 고양시 거주 또는 고양시 근무 기간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 고양시민일 경우 ① 고양시 거주기간 </td> <td>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민일 경우 ② 고양시 근무기간 </td> <td>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td> </tr> </table>	* 고양시민일 경우 ① 고양시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민일 경우 ② 고양시 근무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고양시민일 경우 ① 고양시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민일 경우 ② 고양시 근무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H.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②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③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④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⑤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⑥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⑦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⑧ 군인 <input type="checkbox"/> ⑨ 주부 <input type="checkbox"/> ⑩ 학생 <input type="checkbox"/> ⑪ 무직 <input type="checkbox"/> ⑫ 기타 ()
I. 월평균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400만원-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500만원-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⑧ 600만원 이상
J. 월평균 문화예술비 지출액	<input type="checkbox"/> ① 월평균 1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월평균 1만원 ~ 5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월평균 5만원 ~ 1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월평균 10만원 ~ 2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월평균 20만원 ~ 3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월평균 30만원 이상
K.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나 교육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____회)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L.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캠페인 등)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____회)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Survey of Cultural Diversity in Goyang City

Sunyoung Kwon*, Seolhwa Hwang*

Cultural diversity, an essential factor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the human races, implies various ways of expressing the culture of communities and societies.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with UNESCO in 2010, Korea established the law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cultural diversity', stating the legal rights of Korean citizens to practice the ideology of cultural diversity. Afterwards, cultural diversity policies have been practiced at the pan-governmental level. However, since a local community is where cultural diversity is manifested and citizens can communicate and relate amongst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on plans and policy tasks that underline the specifics of each individual locale.

Recently, major cities including Seoul started establishing the cultural diversity as an essential value. Goyang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a million, like any metropolitan area, is faced with highly probable exposure to the influx of diverse cultures. Goyang City must be prepared to promote full-fledged discussions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and carry out policy tasks. In particular, there is always a chance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w culture may elicit conflict and collision with the pre-existing culture, demanding a local society capable of preventing and addressing this concern.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Sufficient support and sympathy from the residing citizens are key factors for reinforcing the competence of the local society, which is why the City of Goyang must work hard to enhance the cultural acceptance and tolerance of the residents of this region.

The city of Goyang must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ccurately in order to seek public undertakings. A reliable tool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is needed for its sake, and the foremost part, to utilize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diversity as the part of the index research. Rather than developing a new index, however, this research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investigating existing survey indices of cultural diversity developed at the country or metropolitan levels and then applying and adapting them to our research.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established index of cultural diversity primarily concerns a special class of minorities such as married immigrants, North Korean refugees, and foreign workers. Although there were also other surveys on the public perception on cultural diversity aside from cultural minority groups, the focus of the surveys was primarily on promoting social awareness for those who belong to such minority groups so that they can express their cultural heritage without any public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ho would you consider a minority in our society? What is the definition of a minority? Do minorities include everyone not part of a majority? Are there any minorities that are not married immigrants, North Korean refugees, and foreign workers? This paper likewise puts out these questions for discussion, focusing on not the minorities itself,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oritiness' innate to all individuals. In other words, we proposed an index for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diversity that ultimately includes amendments and addition of the questionnaire applicable to the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in Goyang, especially putting emphasis not on a specific minority class, but the 'minoritiness' in every individual while still making use of the original index(previously developed in preceding research).

Through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e were able to come to a few conclusions.

First, there is a lack of foundation to promote policies pertaining to cultural diversity in Goyang. Although there are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unit projects associated with cultural diversity, none of them manage and systematically plan or implement these types of unit projects. In addition, amidst the lack of these local enactments, we need to begin preparations first before institutionally promoting policies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Secondly,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is not contained within a specific domain, but is a lifelong demanded concept that should be understood by the entire city of Goyang as well as implemented in policy projects. Despite the presence of various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launched policy project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these associations still need to organize a networking system amongst each other. Furthermore, in order to continue to make clear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we must make arrangements to share the collected administrative data through the connections between these organizations.

Thirdly, we need to enhance awareness among civilians and the local community about the value and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respondents generally showed relatively low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compared to the extent to which people agreed to its importance. We must take priority in spreading the publicity about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by increasing the awareness of how this value influences ourselves,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Fourthly, we must recognize and deal with the issues regarding conflict within a specific region or among different age group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mong the different social issues, most responded that the conflict within a region (conflict within developing cities and underdeveloped cities) and the different generations was the most problematic.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the countermeasures in comparison were deemed insufficient. Therefore, the city of Goyang must continue to contemplate from a cultural perspective on how to resolve and overcome these relevant

problems.

Fifth, we must put in political effort to allow the residents of Goyang to experience a more diversified cultural and arts experience.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residents of Goyang participated in cultural arts experiences at a higher prevalence compared to the other cities, most of the viewing activity centered around movies, local fair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This means we must politically strive to diversify the context of these activities.

Sixth, we drew a conclusion implying that we must consider the importance of specific regions and age groups when enforcing political actions associated with cultural diversity. Respondents with expenditures in cultural and arts compared to the respondents with absolutely no expenditures in these areas showed a larger interest and acceptance of social, cultural phenomenon. Therefore, as respondents are more aware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or have more experience in related education and activity, they tend to show higher interest and acceptance of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Meanwhile, less people exhibited concern for the crisis of traditional culture, especially those in their 20s as well as residents of Ilsanseo-gu and Ilsandong-gu. Therefore, this aspect must be contemplated when pushing ahead with political plans.

After reviewing these research results, we proposed a political plan that is introduced in the following paragraph.

Our policy objectives include 'Engagement of the formation of civil culture', 'Co-existence of disparity and dissimilarity', 'Enjoyment and diversification of cultural expression' and in order to strategically achieve these goals, we proposed the 'Enhancement of the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of cultural diversity', and 'construction of the foundation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More concretely, we proposed political tasks that consists of belows: ① Enhancing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② Increasing exposure to boost

comprehension of cultural diversity in everyday life, ③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running of cultural arts programs affiliated with cultural diversity, ④ Supporting the enrichment of expertise in mediating consultation rather than evaluation, ⑤ Improving the competence of cultural diversity within a community, ⑥ Enacting the ordinance of cultural diversity, ⑦ Forming a committee responsible fo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policies, ⑧ Developing an index and constructing a monitoring system and investigatio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diversity, ⑨ Promoting a networking system to enforce cultural diversity.